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핀란드 -

김정현



지역법제 연구 15-16-④-1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핀란드-

김 정 현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핀란드-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Opening of Information
-Finland-

연구자 : 김정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im, Jung-Hyun

2015.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정부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제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행 정보공개법은 1998년 제정되어 2004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음
- 핀란드의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정보공개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

II. 주요 내용

- 핀란드의 정보공개 관리체계
 - 개요 및 정보관리법제의 기본 구조
- 핀란드의 정보공개 법제의 주요내용
 - 개요 및 정보공개법제의 상세한 내용 소개
- 핀란드의 정보공개 법제의 시사점

Ⅲ. 기대효과

- 핀란드의 정보공개 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제어 :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 대상, 정보공개 의무기관, 청구상담, 행정심판소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 The government is trying to materialize a people-centered administration by opening entire process of policy and operation to the people
- Improvement or reorganization of the related legislation is required in the current situation to support the government policy. The current Freedom of Information Act was established in 1998 and no big change has made since the general revision was made in 2004.
- It is expected to find a problem on the current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bring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study on Finnish Freedom of Information Act.

II . Contents

The management system of Finnish Freedom of Information

- Parliamentary Ombudsman

The main content of Finnish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 Establishment of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in 1999

- In order to compel the actual openness of information by improving the exist law and clearly define the matters in which law should protect.

The implication of Finnish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 In Finland, the range and requirements of closed information are precisely specified in the law to help people grasp the range of public information in easier way.
- Also the process for the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has been relaxed to help people make easy request

III. Expectation

- The study on Finnish 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 is expected to be baseline data for the revision of our related legislations in the future.

➤ **Key Words : Freedom of Information Act,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Target Information, Institutions and Agencies Required to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Parliamentary Ombudsman**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9
제 1 절 연구의 목적	9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 2 장 정보공개 관리체계	11
제 1 절 정보공개 감독기관	11
1. 최고 감독기관으로서의 사정감독관과 옴부즈만	11
2. 옴부즈만의 역할	12
3. 현 황	14
제 2 절 정보공개 현황	15
I. 소 개	15
II.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2013~2014)의 수립	16
III.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2013~2014)의 시행	22
IV.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2015~2017)의 소개	29
제 3 장 정보공개법제	35
제 1 절 정보공개법의 연혁	35
제 2 절 정보공개법	36
I. 개 관	36

II. 정보공개청구의 주체 - 정보에 대한 접근권자	38
III. 정보공개 대상	39
IV. 정보공개절차	56
V. 불복절차	59
VI. 제3자의 보호	60
제 4 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시사점	61
제 1 절 한국의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61
I. 정보공개청구권자	61
II. 공개의 대상	62
III. 정보공개절차	66
IV. 불복절차	68
V. 제3자의 보호	69
제 2 절 한국과 핀란드 정보공개법제의 비교	70
제 5 장 결 론	85
참 고 문 헌	87
<부 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9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정부는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정부 3.0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 3.0은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과 공유, 부처간의 소통과 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 3.0의 기본방침은 정부가 하는 일을 정책 전 과정에 걸쳐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중심을 정부가 아닌 국민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¹⁾

정부 3.0의 일환으로 2013년 11월 13일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4년부터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각종 정부위원회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²⁾을 받는 기관·단체 등까지 확대되어 1,750개가 추가되어 정보기관 대상기관의 수는 30,510개에서 32,260개로 확대되었다.³⁾

또한 정부가 2014년 발표한 ‘9대 핵심 과제’ 중 1순위는 ‘공공 부문 개혁’이고 이를 위한 4개 개혁방향은 ‘정보 공개 확대’,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개선’ ‘생산성 제고(기능 점검)’, ‘임원 보수 조정’ 등이었던 만큼, 정보 공개 확대는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다.⁴⁾

1) 정부 3.0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http://www.gov30.go.kr/gov30/int/intro.do> 참조. (최종 방문일 : 2015.10.30일)

2)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에 한한다.

3) 안전행정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로드맵 확정”, 2013.11.13.일자 보도자료, 1면.

4)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https://www.economy.go.kr/public/publicReform.jsp> 참조 (최종방문일: 2015.10.30.)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제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행 정보공개법은 1998년 제정되어 2004년 전부개정된 이후 수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왔으나, 대부분 타법개정이었다.

따라서 정부 3.0의 성공적 정착과 공공부문개혁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의 정보공개 현황 및 정보공개의 담당조직, 관련법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재 정보공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핀란드의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정보공개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핀란드의 정보공개 법제에 관한 연구이므로 핀란드의 정보공개법률과 명령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법령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핀란드의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정보공개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를 통해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정보공개 관리체계

제 1 절 정보공개 감독기관

1. 최고 감독기관으로서의 사정감독관과 옴부즈만

핀란드에서 공무원 및 행정당국의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두개의 최고기관은 사정감독관(Chancellor of Justice) 및 의회 옴부즈만(Parliamentary Ombudsman)이다.⁵⁾ 두 기관의 권한과 임무는 공무원 및 행정당국의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대체로 유사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고소(complaint)는 사정감독관 또는 옴부즈만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

다만, 일부 업무분장의 차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어느 기관이 조사할지 여부가 결정되며, 업무분장은 법률에 따라 결정됨(헌법 제110조)⁶⁾

옴부즈만의 전속 관할은 군대, 국경수비대, 평화유지군 및 감옥 기타 구금시설과 관련된 사안(의회옴부즈만법 제5조 제1항)이다.⁷⁾

양 기관 모두에 청구가 접수된 경우, 먼저 수신한 쪽이 조사를 개시하며, 양 기관이 같은 사안을 동시에 조사하지는 않는다. 양 기관은 자신의 전속관할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를 다른 기관에 이송한다.

5) 사정감독관 및 의회 옴부즈만에 관한 내용은 2013년 핀란드 옴부즈만 연례 보고서 (Parliamentary Ombudsman Of Finland Summary Of The Annual Report 2013);

<http://www.oikeusasiamies.fi> 참조(최종방문일: 2015.11.2.)

6) 핀란드 헌법 원문은 <http://www.finlex.fi> 참조(최종방문일: 2015.11.2.)

7) 의회옴부즈만법(Parliamentary Ombudsman Act, 197/2002) 원문은 <http://www.finlex.fi> 참조(최종방문일: 2015.11.2.)

2. 옴부즈만의 역할

(1) 개 관

옴부즈만은 장관, 대통령, 판사를 포함하여 당국과 공무원이 법률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헌법 제110조, 헌법 제112조, 의회옴부즈만법 제1조). 또한 옴부즈만은 감옥, 군대, 기타 구금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형자, 구금자 징집자 등의 처우를 감독할 수 있다(의회옴부즈만법 제5조 제1항).

(2) 고소의 조사

옴부즈만의 관할에 속하는 사안이라면, 공무원의 행위에 위법 또는 의무위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고소할 수 있다(의회옴부즈만법 제2조 제1항). 고소는 서면에 의해야 한다(의회옴부즈만법 제2조 제2항).

의회옴부즈만 홈페이지는 일반 국민이 매우 쉽게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즉, 국민은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자신이 비판하고자 하는 당국, 공무원, 혹은 공무를 행하는 사인의 이름, 대상행위 및 그 시간, 장소 등, 대상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웹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미리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한다.⁸⁾

(3) 조사의 개시

옴부즈만은 주로 접수된 고소를 심사하지만, 스스로 인지한 사안에 개입할 수도 있다(의회옴부즈만법 제3조, 제4조).

8) 의회 옴부즈만 홈페이지 참조. <http://www.oikeusiamies.fi/Resource.phx/eoa/english/complaints/complaintform.htx> (최종방문일: 2015.11.2.)

옴부즈만은 고소가 자신의 관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고, 당국이 불법적으로 조치했거나, 의무를 방기했다는 의심에 근거가 있다면 조사를 개시한다(의회옴부즈만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이 경과한 사안에 대한 고소의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의회옴부즈만법 제2조 제3항).

(4) 조사의 절차

옴부즈만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옴부즈만은 관여된 자의 의견을 청취한다(의회옴부즈만법 제9조).

또한 옴부즈만은 여러 당국에 보고서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경찰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의회옴부즈만법 제7조, 제8조).

(5) 조사 후 옴부즈만의 조치

조사 후, 옴부즈만은 사건과 관련된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가장 강도가 높은 조치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형사소추(prosecution)이다(헌법 제110조).

형사소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옴부즈만은 공적인 징계(official reprimand)를 내릴 수 있다(의회옴부즈만법 제10조 제1항).

대부분의 사안에서 옴부즈만은, 당국의 절차가 위법 또는 부당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관련 당사자에게 그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방식을 환기한다(의회옴부즈만법 제10조 제2항). 옴부즈만 연례보고서의 부록에는 법원, 검찰, 경찰, 국방부 및 국경수비대, 교도행정, 이민행정, 보건, 사회복지, 사회보험, 노동 및 고용, 교육 등 분야별로 조사를 받은 기관의 목록이 상세하게 첨부된다.⁹⁾

9) 2013년 핀란드 옴부즈만 연례 보고서 부록(ANNEX) 4; 2013년 핀란드 옴부즈만 연례 보고서, 135면 이하.

3. 현 황

2013년 핀란드 옴부즈만은 5,231건의 새로운 고소를 접수하였고, 5,355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하였다. 고소의 내용은 대체로 당국의 처리절차나 결정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다. 그 밖에도 옴부즈만은 매년 400여건의 편지를 수신하였다.¹⁰⁾

<표 1> 고소사건에 대한 옴부즈만의 조치(2013년)

조치	횟수(건)
형사소추	0
징계	31
견해표명	590
- 견책	304
- 지도	286
조사진행 중 시정	45
기타	83
- 조정	22
조치 없음	2,814
- 부적절한 절차의 부재	443
- 근거 없음	2,371
조사 미시행	1,680
- 옴부즈만의 관할 밖	189
- 주무관청에 계류중이거나 상소의 가능성 존재	736
- 불특정	276
- 사정감독관으로 이송	30
- 검찰청으로 이송	6
- 기타 당국으로 이송	203
- 2년 경과	134
- 기타 이유로 수리 불가	106

10) 2013년 핀란드 옴부즈만 연례 보고서, 133-134면.

<표 2> 자체 조사사건에 대한 옴부즈만의 조치(2013년)

조치	횟수(건)
형사소추	0
징계	2
견해표명	31
- 견책	25
- 지도	6
권고	9
조사진행 중 시정	6
기타	5
조치 없음	12
- 부적절한 절차의 부재	3
- 근거 없음	9
조사 미시행	9
- 주무관청에 계류중이거나 상소의 가능성 존재	1
- 기타 이유로 수리 불가	8

제 2 절 정보공개 현황

I. 소개

핀란드 정부는 정보 공개를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정보 공개를 통해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정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여러 입법적 조치가 있었는데, 1999년의 ‘정부활동공개에 관한 법’(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은 공문서 속의 정보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이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고 적절한 정보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핀란드는 정보 공개를 통한 열린 정부의 실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2012년 봄 ‘열린 정부 동반관계’(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http://www.opengovpartnership.org/>)에 참여를 결정하고 그에 관한 실천 계획을 제출하였다. 핀란드의 참여는 2013년 4월에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2013년 봄부터 열린 정부를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Finland’s Action Plan on Open Government)의 핵심은 정보 공개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이 같은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은 핀란드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시민 구성원의 공동의 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2013~2014년도에 제1차 실천 계획을 시행하였고, 그에 대한 경과 보고와 함께 개선점을 보완하여 현재 2015~2017년 제2차 실천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II.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2013~2014)의 수립

1. 개 요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Finland’s Action Plan on Open Government)은 가시성(열린 절차) (Visibility (Open procedures)), 이해성(명료한 언어) (Comprehensibility (Clear language)), 사실성(열린 지식) (Facts (Open knowledge)) 및 조력자(Enabler)로서의 정부, 네 가지를 주제 영역으로 해서 18개의 수행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¹¹⁾ 각 수행

11) 2013-2014년 핀란드 열린정부 경과보고서(Finland Progress Report 2013 - 2014); 2013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Finland’s Action Plan on Open Government 2013); <http://www.opengovpartnership.org/country/finland/comment-report/2013-2014-finland-progress-report-public-comments-section>(최종방문일: 2015.10.30)

과제는 공개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열린 절차, 명료한 언어, 열린 지식의 영역과 관련해서 정부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운영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력자로서의 정부 영역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의 발전과 그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의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실천 계획은 정보의 공개와 시민의 참여라는 분야를 통합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이해성과 공개성을 연결함으로써 보다 증대된 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조력자로서의 정부는 시민단체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실천 분야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열린 지식의 주제 영역은 ‘정부의 열린 정보 프로그램’(Government’s Open Data Programme)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은 공공 행정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로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매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최상위의 청렴 국가 중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핀란드의 정부 운영에 있어 공개성과 투명성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 열린 절차: 가시성

정부 활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정부 활동의 준비 단계에서부터의 정보 공개를 강조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시민이나 단체, 기업에서 입법 계획,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정보에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이에 관한 홍보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여전히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²⁾

12) 2013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4면; 2013-2014년 핀란드 열린정부 경과보고서 29-30면.

또한 사업의 핵심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에 따라 예기되는 영향 평가에 대해서도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이외에도 예산 과정에서의 참여는 시민들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분배와 사용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 전달이 보다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열린 절차의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 및 상호작용의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¹³⁾

수행 과제¹⁴⁾:

- (1) 준비 과정에서의 공개를 확대할 것.
- (2) 공무원의 직무 설명에 있어 대화 기술을 강조할 것.
- (3) 사전적인 공표와 의사소통을 강화할 것.
- (4) 참여적 예산 편성을 증진할 것.
- (5) 정보통신기술과 e - 서비스 개발에 있어 공개성과 고객지향성을 증대할 것.
- (6) 공개 및 온라인 미팅의 횟수를 증가할 것.

주무 당국¹⁵⁾: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3. 명료한 언어: 이해성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은 적정한 언어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공무원은 적절하고, 명료하며,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의 기초는 시민은 정부 당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3) 2013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4-6면; 2013-2014년 핀란드 열린정부 경과보고서, 31-45면.

14) 2013-2014년 핀란드 열린정부 경과보고서 26-45면

15) 2013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4면

이는 시민들이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고 언어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¹⁶⁾

명료한 언어, 특히 명료한 행정 언어는 시민의 권리이다. 이는 통하여 시민들에게 참여하고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공동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주요한 사안들은 명료한 언어를 통해서 공동의 관심이 될 수 있다.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대부분 좋은 언어에 관한 것이다.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에서는 입법, 행정 및 서비스 언어의 개발을 위한 실무 조직을 운영해 왔다.¹⁷⁾

수행 과제¹⁸⁾:

- (1) 정부의 제안에 있어 표준어 따른 표제와 개요가 초안될 것.
- (2) 결정을 시각화할 것.
- (3) 이미 알려진 용어의 사용을 포함하여 명료하고, 평이한 언어의 사용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구성할 것.
- (4) 행정기관에 의해 작성된 텍스트의 이해가능성 정도가 시민 및 서비스 사용자와 함께 평가될 것.
- (5) 행정과 서비스 생산에 사용된 용어와 개념을 표준화하고 명확하게 할 것.
- (6) 특히 표준 텍스트가 사용되었을 경우 고객에 대한 서한과 결정의 이해가능성을 향상시킬 것.

16) 2013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6면; 2013-2014년 핀란드 열린정부 경과보고서, 48-50면.

17) 2013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6-7면; 2013-2014년 핀란드 열린정부 경과보고서, 51-60면.

18) 2013-2014년 핀란드 열린정부 경과보고서 46-60면

주무 당국¹⁹⁾: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핀란드 국어원(Institute for the Languages of Finland)

4. 열린 지식: 사실성

정부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주요 자료의 경우 일부는 인터넷에 공개되지만, 문서 형태의 자료는 자동적인 검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분석 방법은 그에 관한 법적 제한이 없는 한 인터넷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공공 행정에서 공개된 정보의 사용에 관한 용어의 경우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에 따라 정보의 조합이 용이하게 가능하도록 정해져야 한다.

시민은 몇 가지의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등록되거나 저장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신에 관한 정보의 조사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정보 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록부 등에 대한 공개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 공개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개인의 신분이 식별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공공 행정 전반에 통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정보 공개와 개인 정보에 관해서는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와 개인 정보의 사용이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헌법적 권리와 정보 공개의 조화로운 이해는 공공 행정이나 IT 분야에서 정부 공개에 관한 법(Act on openness of government)이나 개인정보법(Personal data act)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²⁰⁾

19) 2013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6면

20) 2013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7-8면; 2013-2014년 핀란드 열린정부

수행 과제²¹⁾:

- (1) 컴퓨터 해독 가능한 행태로 새로운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공표하고, 기존의 공개된 데이터를 그러한 형태로 변형할 것.
- (2) 공개 데이터와 지식의 사용을 위한 용어를 명확히 할 것.
- (3) 사생활 보호와 공개 데이터의 조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강화하고, 시민이 자신에 대한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때 ‘익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할 것.

주무 당국²²⁾: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5. 조력자로서의 정부

공공 행정은 핀란드 시민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3분야의 활동이나 운영, 적극적인 시민 활동에 조력해야 한다. 조력자로서의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의 입법이나 행정 처리에 있어 의사소통 및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를 찾아내고, 그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 사회의 대표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증진하며, 여러 시민 단체를 위한 교육과 웹 지원 도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민 단체 지향적인 서비스와 웹 지원 도구를 증진하고, 공공 재정과 투명성을 증진한다.²³⁾

경과보고서, 61-70면.

21) 2013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8면; 2013-2014년 핀란드 열린정부 경과보고서, 61-70면.

22) 2013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7-8면

23) 2013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8-9면; 2013-2014년 핀란드 열린정부 경과보고서, 71-78면.

수행 과제²⁴⁾:

- (1) 시민 사회의 활동 장애 요소를 제거할 것.
- (2) 공무원의 사전적인 출석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
- (3) 시민 사회 단체에 웹 지원 도구와 교육을 제공할 것.

Ⅲ.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2013~2014)의 시행

1. 개 요

핀란드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Finland’s Action Plan on Open Government)의 핵심은 시민 참여의 증진이다.²⁵⁾ 열린 절차, 명료한 언어, 열린 지식, 조력자로서의 정부 네 가지로 구성된 실천 계획은 18개의 구체적 수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과제는 공개성을 증진하기 위한 세부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 계획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실무 조직의 사무국에서는 각 정부 부서와 상임 장관을 방문하였다. 면담의 목표는 각 부서에서 열린 정부의 실현을 위해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논의하고, 각 부서의 열린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천 계획의 시행은 각 정부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공문에서는 프로그램의 주제 목표가 소개되었고, 실천 계획의 시행이 전체 공공 분야에 보편적으로 적용 되는 과제임이 강조되었다.²⁶⁾

24) 2013-2014년 핀란드 열린정부 경과보고서, 71-78면.

25) 2013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Finland’s Action Plan on Open Government 2013) : <http://www.opengovpartnership.org/country/finland/comment-report/2013-2014-finland-progress-report-public-comments-section> (최종방문일: 2015.10.30)

26) 2013-2014년 핀란드 열린정부 경과보고서, 14면.

각 정부 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열린 정부의 실천 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락 전담 공무원을 각 1명씩 임명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열린 정부 네트워크에는 86명의 공무원이 포함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 및 지역 당국 협회’(the Association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에서 진행하는 ‘중심을 향한 시민들’(Citizens to the center) 프로젝트와의 협력 하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실천 계획의 시행에 관한 보고뿐만 아니라, 실천 계획의 시행 자체에 있어서도 이러한 네트워크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은 네 가지 주제 영역에서 18개의 구체적 수행 과제를 포함하였고, 각 수행 과제는 다시 46개의 세부 조치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에 있어 재무부가 46개 중 35개의 세부 조치를 담당함으로써 가장 큰 책임을 수행하였고(76%), 다음으로 핀란드 지방 및 지역 당국 협회가 19개의 세부 조치를 담당하였다(41%). 실천 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별 담당 비율은 정부 부처 및 정부 기관에서 41개의 세부 조치를 담당하였고(89%),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및 지역 당국 협회와 함께 20개의 세부 조치를 담당하였으며(43%), 시민단체 조직이 6개의 세부 조치를 담당하였다(13%).²⁷⁾

27) 2013-2014년 핀란드 열린정부 경과보고서, 4면.

2. 실천 계획의 시행 평가 (2013~2014 경과보고)²⁸⁾

	잠재적 영향				수행 단계				시기성	다음 단계
	없음	적음	중간 정도	변화 정도	미시 행	제한 적	상당 정도	완료		향후 계획에의 포함여부
1. 열린 절차										
1.1. 준비 과정의 공개 확대	○	○	○		○	○	○		지체	유
1.1.1. 정부의 온라인 프로젝트 기록부를 개발할 것	○	○			○	○	○		지체	무
1.1.2. 명료하고 일반적인 과정 지도를 공표하여 결정 과정을 보다 추적하기 용이하게 할 것	○	○			○	○			지체	무
1.1.3. 입법상의 협의 지침에 관한 원칙을 행정에도 확대할 것	○	○			○				지체	무
1.1.4. ‘공무원을 위한 열린 정부 원칙’을 승인할 것	○	○			○	○	○	○	정시	유
1.1.5. 새로운 시민 참여 포털을 지원하고 제공할 것	○	○			○	○	○	○	정시	무
1.1.6.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개 증진에 관한 자발적 사례를 수집할 것	○	○	○		○	○	○		정시	무
1.1.7. 2014 열린 예산 지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	○	○		철회				.	무
1.1.8. 지방자치법 개정의 일환으로서 공개 증진의 다른 방안을 연구할 것	○	○			○	○	○		정시	무
1.2. 공무원의 직무 설명에 있어 대화 기술의 강조	○	○	○		○	○	○		지체	유
1.2.1. 대화 기술을 강조할 것	○	○	○		○	○			지체	유
1.2.2. 고객 지향적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교육을 마련할 것	○	○			○	○	○		정시	무

28) 2013-2014년 핀란드 열린정부 경과보고서, 4-7면.

	잠재적 영향				수행 단계				시기성	다음 단계
	없음	적음	중간 정도	변화 정도	미시 행	제한 적	상당 정도	완료		향후 계획에의 포함여부
1.3. 사전적 공표와 의사소통의 강조	○	○			○	○	○		정시	유
1.3.1.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사전적 의사소통의 향상을 위한 규제 방안을 연구할 것	○	○			○	○	○		정시	유
1.3.2. e서비스와 e민주주의에 관한 실천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에 있어 사전적 의사소통을 강조할 것	○	○			○	○	○		정시	유
1.4. 참여적 예산 편성의 증진	○	○			○	○			지체	유
1.4.1. 참여적 예산 편성과 관련한 현재의 실무 경험에 관한 정보를 보급할 것	○	○			○	○			지체	무
1.4.2. 시민을 위한 대안적 예산 편성에 관한 게임 유사 애플리케이션의 가능성을 연구할 것	○	○			○				지체	무
1.4.3. 참여적 예산 편성을 위한 파일럿 지방자치단체를 탐색할 것	○	○			○	○	○		정시	무
1.4.4. 참여적 예산 편성을 위한 파일럿 정부 기관을 탐색할 것	○	○			○	○			지체	유
1.4.5. 입법을 통해 참여적 예산 편성을 증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할 것	○	○			○	○	○		정시	무
1.5. 정보통신기술과 e - 서비스 개발에 있어 공개성 및 고객지향성의 증대 디자인, 평가 및 평가단과 함께 사용자 서비스를 시행할 것	○	○			○	○	○		정시	유
1.6. 공개 및 온라인 미팅의 횟수를 증가 공개 미팅 및 문서의 공동 생성에 관한 모범 사례를 수집·공유할 것	○	○			○				지체	유

제 2 장 정보공개 관리체계

	잠재적 영향			수행 단계				시기성	다음 단계	
	없음	적음	중간 정도	변화 정도	미시 행	제한 적	상당 정도		완료	향후 계획에의 포함여부
2. 명료한 언어										
2.1. 정부 제안에 있어 표준어에 따른 표제의 초안 모든 입법 초안에 간결한 표제를 부여하고, 가능하다면 평이한 언어로 법의 주요 내용을 기술할 것	○	○			○	○			지체	유
2.2. 결정의 시각화 국가 예산 “무엇을 내가 나의 세금으로 내가 얻는가?” 및 e서비스, e민주주의 프로그램 예산을 시각화할 것	○	○			○	○	○		지체	유
2.3. 명료하고 평이한 언어의 사용을 위한 공무원 교육 정부 문서에 있어 평이한 텍스트의 사용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창출할 것	○	○			○	○	○		정시	무
2.4. 공공 행정 문서의 평가 시민 및 서비스 사용자와 함께 공공 행정의 의해 작성된 문서의 이해가능성 정도를 평가할 것	○	○			○	○			지체	무
2.5. 공공 행정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용어의 표준화 및 명확화	○	○	○		○	○	○		정시	무
2.5.1. 온톨로지 작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환경 및 모델을 제공할 것	○	○	○		○	○	○		정시	무
2.5.2. 행정 조직과 프로그램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 것	○	○			○	○	○		정시	무
2.6. 고객 서한 및 결정에 있어 표준 텍스트를 사용한 가독성의 증대	○	○	○		○	○			지체	유

	잠재적 영향				수행 단계				시기성	다음 단계
	없음	적음	중간 정도	변화 정도	미시 행	제한 적	상당 정도	완료		향후 계획에의 포함여부
2.6.1. 구문에 기초한 쓰기 세미나를 구성할 것	○	○			○	○	○	○	정시	유
2.6.2. 구문에 기초한 쓰기 파일럿을 개발할 것	○	○			철회				·	유
2.6.3. 정보통신기술 지침서에 따른 간결한 표준 텍스트를 포함할 것	○	○	○		○				지체	유
3. 열린 지식										
3.1. 컴퓨터 해독 가능한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의 공개 및 공표, 기존 공개 데이터의 변형	○	○	○		○	○			지체	유
3.1.1. 구성화된 형태의 보다 많은 문서를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할 것	○	○			○				지체	유
3.1.2. 한 포털에서 정부 데이터 세트에 관한 데이터를 공표할 것	○	○			○	○	○		지체	무
3.1.3. 정보통신기술의 조달과 아키텍처 원칙에 있어 공개성을 증진할 것	○	○			○	○			지체	무
3.1.4. 분석 도구 및 조사의 공표를 고려할 것	○	○			○	○			지체	무
3.1.5. 정부 공개성의 중심인 데이터 비축물을 공개할 것	○	○	○		○	○			지체	유
3.2. 공개 데이터와 지식 사용의 용어를 명확히 할 것 공공 분야에서 국제 관행에 기초한 용어 사용의 권고 사항을 생성할 것	○	○	○		○	○	○		지체	유
3.3. 개인 정보에 관한 시민의 권리를 강화할 것	○	○	○	○	○	○			지체	유

제 2 장 정보공개 관리체계

	잠재적 영향				수행 단계				시기성	다음 단계
	없음	적음	중간 정도	변화 정도	미시 행	제한 적	상당 정도	완료		향후 계획에의 포함여부
3.3.1. 시민들이 등록된 개인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선택 수단에 대해서 연구할 것	○	○			○	○			지체	유
3.3.2. 시민들의 개인 정보 열람 기능과 개인 정보 재사용에 관한 권리를 구성할 것	○	○	○	○	○	○			지체	유
3.3.3. 공개 데이터와 데이터 사생활 보호의 조합에 관한 세미나를 구성할 것	○	○			○				지체	유
3.3.4. 공개 데이터 지원 서비스와 웹 지원 도구를 창출하기 위한 안정적 운영 환경을 창출할 것	○	○	○		○	○			지체	유
4. 조력자로서의 정부										
4.1. 시민 사회의 활동을 위한 장애 요소의 제거	○	○	○		○	○			지체	유
4.1.1. 공공 행정에서 장애 요소를 보고 하기 위한 ‘장애요소에 대해서 알기’ 캠페인을 실시할 것	○	○	○		철 회				·	유
4.1.2. 결과 처리의 수행을 항시 포함하는 협의 지침을 업데이트 할 것	○	○	○		○	○	○		지체	유
4.1.3. 공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의 창출에 관해서 모니터하고 보고할 것	○	○			○				지체	무
4.2. 공무원의 사전적 출석과 접근 가능성	○	○			○	○	○		지체	유
4.2.1. 공무원의 자발적인 공개 역할을 창출하고 전 기관에 전파할 것	○	○			○	○	○	○	정시	유
4.2.2. 시민 사회 활동에 공헌한 공공 행정 공무원을 매년 포상할 것	○	○			○	○	○	○	조기	무

	잠재적 영향				수행 단계				시기성	다음 단계
	없음	적음	중간 정도	변화 정도	미시 행	제한 적	상당 정도	완료		향후 계획에의 포함여부
4.2.3. 공무원에게 협의 과정에서 시민과의 접촉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것	○	○			○				지체	무
4.3.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한 웹 지원 도구와 교육의 제공	○	○			○	○	○	○	조기	무
4.3.1. 웹 지원 도구와 교육 수요의 파악할 것	○	○			○	○	○	○	정시	무
4.3.2. 웹 지원 도구를 제공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	○			○	○	○	○	조기	무

IV.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2015~2017)의 소개

1. 개 요

2015~2017년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Finland’s Action Plan on Open Government)은 2013~2014년도 실천 계획의 수행 과제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치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²⁹⁾ 이에 따라 세분화된 조치들을 보다 간략히 함으로써 실천 계획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15~2017년도 실천 계획의 주제는 공개성, 책임성, 참여 증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디지털화 및 생산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노년층의 참여를 증진하는

29)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2015~2017). FINLAND : Open Government Action Plan 2015-2017 : <http://www.opengovpartnership.org/country/finland/action-plan> (최종방문일: 2015.10.30)

것을 횡적 주제로 구성하고 있다. 제2차 실천 계획에서 수행 과제의 수는 감소되었다.

제1차 실천 계획의 주제와 관련된 업무들은 여전히 공공 행정에서 수행되고 있다. 제2차 실천 계획에서는 이러한 업무의 중단이 없도록 세부 과제들에 대한 약간의 조정과 함께 주제 영역을 개발하였다. 2015~2017년도 실천 계획의 수행 과제는 투명한 정부(clear government), 조력자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an enabler), 열린 절차(open procedures) 및 청소년·노년층의 참여 증진(enhancing engagement of children, youth and the elderly)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차 실천 계획의 명료한 언어 관련 과제는 투명한 정부에 포함되었으며, 열린 지식 관련 과제는 조력자로서의 정부에 포함되었다.

2. 투명한 행정

문제 의식: 정부의 구조는 복잡하고 사용하는 언어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정책이 결정되고 준비되는 담당 부서와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 역시 어렵게 되었다. 공공 행정에 있어 언어와 구조의 명확성을 증진시킬 필요성은 시민들과의 대면 접촉에서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³⁰⁾

주요 목표: 주요 개혁에 있어 고객 지향성에 추가하여 투명한 구조 및 과정을 목표로 한다. 구조 및 과정은 시민들이 각기 다른 안건에 있어 어느 당국과 접촉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언어 사용은 정확하고,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준비 중에 있는 안건에 관한 정보는 이용 가능하고,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행정부는 업무

30) 2015-2017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7-9면.

수행 방식의 개발에 있어 피드백을 담당하고 그를 고려하도록 한다.³¹⁾

주무 당국³²⁾: 재무부

관련 기관³³⁾: 정부 부처,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및 지역 당국 협회, 핀란드 국어원

3. 조력자로서의 정부

문제 의식: 정부 보유 데이터의 공개가 시작됨으로써, 중요 데이터 베이스들이 공개되었다. 데이터 비축물에 대한 공개 요구도 증대되었는데, 회사 및 기업 데이터, 산림 사용에 관한 통지, 국유 산림 사용에 관한 결정, 환경 영향 평가, 공공 조달, 정부 기관의 데이터 공개 계획 등의 정보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접근성은 공개된 데이터에 관한 링크와 메타 데이터가 존재하는 포털의 공개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디지털화는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해 준다. 자발적 활동의 전제 조건이 지원되어야 한다.³⁴⁾

주요 목표: 정부는 보유 중인 정부 데이터를 공개하고, 자발적 활동의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기업과 시민 사회의 기회를 가능하게 한다. 지방의 공공 서비스의 참여와 사용은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증진시킨다.³⁵⁾

주무 당국³⁶⁾: 재무부, 법무부, 통신부

31) 2015-2017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8면.

32) 2015-2017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7면.

33) 2015-2017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7면.

34) 2015-2017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9-11면.

35) 2015-2017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10면.

36) 2015-2017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9면.

관련 기관³⁷⁾: 정부 부처,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및 지역 당국 협회 / 시민 사회 단체, 시민 사회 정책 자문 위원회

4. 열린 절차

문제 의식: 정부 프로젝트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입법 초안을 위한 지침이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정부 활동에 있어 보다 많은 웹 캐스팅이 요구된다. 정부 조직 내부의 공개성이 증진되어야 한다. 로비 활동의 기록을 위한 요구가 사정되어야 한다.³⁸⁾

주요 목표: 정부 절차를 공개한다.³⁹⁾

주무 당국⁴⁰⁾: 법무부, 재무부

관련 기관⁴¹⁾: 정부 부처,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 시민 사회 단체, 노사 조직

5. 청소년 및 노년층의 참여

문제 의식: 청소년 및 노년층의 참여 기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사회 단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시민 사회의 미팅과 워크숍에서 청소년과 노년층의 참여를 포괄하는 것이 강조되어 왔다. 다양한 연령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참여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⁴²⁾

37) 2015-2017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9면.

38) 2015-2017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11-13면.

39) 2015-2017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13면.

40) 2015-2017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11면.

41) 2015-2017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11면.

42) 2015-2017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14-15면.

주요 목표: 공공 서비스의 결정 준비 과정 및 공동 설계, 공동 생성에 있어 청소년 및 노년층의 참여를 증진한다.⁴³⁾

주무 당국⁴⁴⁾: 교육문화부

관련 기관⁴⁵⁾: 사회복지보건부 및 기타 부처,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 단체, 노인 관련 단체

43) 2015-2017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14면.

44) 2015-2017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14면.

45) 2015-2017년 핀란드 열린 정부에 관한 실천 계획, 14면.

제 3 장 정보공개법제

제 1 절 정보공개법의 연혁

핀란드의 정보공개제도는 스웨덴의 정보공개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⁴⁶⁾ 핀란드가 1766년부터 1809년까지 스웨덴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스웨덴 헌법에 규정된 ‘정보공개 원칙’이 핀란드에서도 적용되었다. 그에 따라 모든 핀란드 시민들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모든 서류와 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다. 물론 1809년부터 1917년까지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는 이러한 정보공개원칙이 제한되기도 하였으나, 1917년 독립 이후부터는 정보 공개의 전통이 다시 부활하였다.⁴⁷⁾

스웨덴이 1949년에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에 대한 개별법률을 제정하자, 핀란드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51년에 「공문서 공개에 관한 법률」(Act on the Publicity of Official Documents, 1951년 제83호)을 제정하였다.⁴⁸⁾ 1951년 2월 9일 공포된 이 법률은 공공문서에 대한 일반 공개와 정보의 자유 보호를 기본목표로 하였으며, 별도의 명령을 통해 예외를 두었다(Decree on Certain Exceptions to the Publicity of Official Documents, 1951년 제650호).⁴⁹⁾

1951년 제정된 「공문서공개법」은 그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러시아의 식민지배시기를 거치면서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관료

46) 이에 대하여는 심영섭, “북유럽 국가의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와 언론보도』, 2008조사분석 워크숍, 한국언론재단, 2008.5.14., 46-48면; 세계일보, “정보공개로 청렴 국가 우뚝-핀란드”, 2008.9.24 참조.

47) 심영섭, “북유럽 국가의 정보공개제도”, 광기성, 세계의 언론법제 정보공개와 언론, 한국언론재단, 2008년 상권, 통권 23호, 103-104면.

48) 앞의 책, 103-104면.

49) 핀란드 법령의 원문 및 영문번역본은 핀란드 법령정보센터 참조 (<http://www.finlex.fi/en/laki/kaannokset/>, 최종방문일: 2015.10.26)

조직이 정보공개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일반시민들 역시 정보공개 청구에 소극적이었다.⁵⁰⁾ 더욱이 공문서공개법에는 많은 비밀보호조항들이 존재하여 정보공개청구의 예외사유가 되었다.

이러한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정보가 실질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법률로 보호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1999년에 「정부활동공개에 관한 법률」(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1999년 621호)이 도입되었다.

1951년의「공문서공개법」은 1999년 제정된 「정부활동공개법」에 따라 대폭 수정되었는데,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공개가 의무화되는 문서에는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문서 뿐만아니라 행정기관이 외부로부터 접수한 문서(외주보고서 또는 외부기증문서)도 포함된다. 공개범위는 별도의 비밀보호관련 법령에서 비공개로 분류되지 않은 문서는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⁵¹⁾

제 2 절 정보공개법

I. 개 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99년 제정된 「정부활동공개법」은 1951년의 「공문서공개법」을 대체한 것이다.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은 1995년에 개정된 핀란드헌법 제2장 제8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정보보호, 제10조의 의견의 자유와 행정정보의 열람을 법률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간에 절충점을 찾기 위한 법률적 보완장치도 마련하였다.⁵²⁾

50) Kuopus, J. Informations freiheit in Finnland. Symposium des Präsidenten des Schleswig-Holsteinischen Landtages und des Unabhängigen Landesentrums für Datenschutz. Kiel : Schleswig-Holsteinischer Landtag & Unabhängiges Landeszentrum für Datenschutz., p.5 (심영섭, 앞의 글, 47면에서 재인용)

51) 심영섭, “북유럽 국가의 정보공개제도”, 광기성, 세계의 언론법제 정보공개와 언론, 한국언론재단, 2008년 상권, 통권 23호, 104면.

52) Kuopus, op.cit.(심영섭, 앞의 글, 48면에서 재인용)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은 총 8개 장 3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문서가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경우, 제3장 문서에 대한 접근권, 제4장 문서에 대한 접근의 허가, 제5장 접근 및 좋은 정보관리 관행을 촉진할 당국의 의무, 제6장 기밀 의무, 제7장 기밀의 저하 및 비밀제한의 해제, 제8장 기타 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이상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의 개관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공개 원칙) 제2조(적용 범위) 제3조(목적) 제4조(당국) 제5조(공문서)</p> <p>제2장 문서가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경우</p> <p>제6조(문서는 당국에 의하여 작성되는 때 다음의 규정에 따라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경우) 제7조(문서가 당국에 제출된 때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경우) 제8조(문서의 일반적인 배포)</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문서에 대한 접근권</p> <p>제9조(공문서에 대한 접근) 제10조(기밀문서에 대한 접근) 제11조(당사자의 접근권) 제12조(개인에 관한 문서에의 접근)</p>	<p>제18조(좋은 정보관리관행) 제19조(진행 중인 문제들에 있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당국의 의무) 제20조(정보를 생성 및 배포할 당국의 임무) 제21조(신청된 데이터 세트의 생성)</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기밀 의무</p> <p>제22조(문서의 기밀) 제23조(비공개 및 이용 금지) 제24조(기밀 공문서) 제25조(기밀의 봉인 및 분류등급)</p> <p>제7장 기밀의 저하 및 비밀제한의 해제</p> <p>제26조(기밀정보에 대한 접근허가의 일반원칙) 제27조(보관 문서에 대한 접근) 제28조(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의 정식허가) 제29조(일정한 기타의 당국에 대한 기밀 정보의 접근 허가)</p>
---	---

<p>제4장 문서에 대한 접근의 허가</p> <p>제13조(문서에 대한 접근 신청)</p> <p>제14조(접근에 대한 결정)</p> <p>제15조(다른 당국에 대한 문서 신청의 추진)</p> <p>제16조(접근 방식)</p> <p>제5장 접근 및 좋은 정보관리관행을 촉진할 당국의 의무</p> <p>제17조(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접근권 고려)</p>	<p>제30조(외국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당국에 대한 기밀정보 접근 허가)</p> <p>제31조(비밀제한의 해제)</p> <p>제32조(비공개의무의 적용)</p> <p>제8장 기타 규정</p> <p>제33조(상소)</p> <p>제34조(수수료)</p> <p>제35조(벌칙규정)</p> <p>제36조(명령을 발할 권한)</p> <p>제37조(효력발생)</p> <p>제38조(이행규정)</p>
---	--

다만, 이하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법과의 비교의 편의를 위해 정보 공개청구의 주체, 정보공개 대상, 정보공개절차, 불복절차, 제3자의 보호 순서로 서술한다.

II. 정보공개청구의 주체 - 정보에 대한 접근권자

핀란드 「정부활동 공개법」(이하 범명 생략)은 제3장에서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권리는 ①공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 ②공적 영역에 속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 ③공문서에 포함된 당사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한편, 개인 또는 법인의 공공자원에 대한 권리보호라는 이 법의 목적(법 제2조)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개인(individual) 뿐만아니라 법인(corporation)에게도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공적 영역에 속한 공문서에 대하여는 ‘누구든지’(everyone)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9조 제1항).

둘째, 공적 영역에서 속하지 않은 정보라 할지라도, ‘당사자(즉, 자신의 권리, 이익 또는 의무가 당해 사안과 관련된 신청인, 항고인)’는 사안을 심리중이거나 심리했던 당국의 허가를 받아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11조 제1항).

셋째, 공문서에 포함된 자신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개인’에게 인정된다(법 제12조).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상 정보접근권자

근 거	분 류	범 위
정부 활동 공개법	공적영역에 속한 공문서에 접근 할 권리(제9조 제1항)	모든 사람(개인, 법인 포함)
	공적영역에 속하지 않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제11조 제1항)	당사자(즉, 자신의 권리, 이익 또는 의무가 당해 사안과 관련 된 신청인, 항고인 등)
	공문서에 포함된 자신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제12조)	모든 개인

Ⅲ. 정보공개 대상

1. 공개대상 기관

「정부활동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당국’(Authorities)이다. 동법은 당국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즉, ①국가 행정기관 및 기타의 국가기관, ②법원 및 기타의 법 집행기관, ③국영기업, ④지방자치단체, ⑤금융감독기관, 국민연금기관을 포함한 핀란드 은행 및 공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의 독립적인 기관(연금보안센터 및 농업 연금연구소의 문서 포함), ⑥의회의 기관, ⑦스웨덴인들의 자치지구인

올란드(Åland)의 행정기관과 올란드 내에 설치된 국가기관, ⑧ 독립적인 위원회, 협의체, 위원회, 실무단, 조사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지방자치단체 연합 및 법, 명령 또는 ①, ②, ⑦ 등에서 정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거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기타의 유사한 기관들이 당국에 포함된다(법 제4조 제1항 각호).

그 밖에도 법, 명령 또는 법이나 명령에 의하여 발하여지는 규정 또는 명령에 의거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법인, 기관, 재단 및 개인도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복음주의 루터교(Evangelical Lutheran Church)의 문서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법 제4조 제2항).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 행정기관 및 기타의 국가기관 ② 법원 및 기타의 법 집행기관 ③ 국영기업 ④ 지방자치단체 ⑤ 금융감독기관, 국민연금기관을 포함한 핀란드 은행 및 공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의 독립적인 기관(연금보안센터 및 농업연금연구소의 문서 포함) ⑥ 의회의 기관 ⑦ 스웨덴인들의 자치지구인 올란드(Åland)의 행정기관과 올란드 내에 설치된 국가기관 ⑧ 독립적인 위원회, 협의체, 위원회, 실무단, 조사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지방자치단체 연합 및 법, 명령 또는 ①, ②, ⑦ 등에서 정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거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기타의 유사한 기관들이 포함 ⑨ 법, 명령 등에 의거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법인, 기관, 재단 및 개인(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⑩ 복음주의 루터교(Evangelical Lutheran Church)
--

2. 공개대상 정보

「정부활동공개법」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공적 영역으로 포섭된 공문서에 대해서 누구든지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공문서, 당국에 제출된 문서, 국민 경제의 발전에 관한 통계자료 등에 대하여 접근권을 인정한다. 다만, 공문서, 당국에 제출된 문서는 공적 영역에 속해야 비로소 접근권의 대상이 된다. 「정부활동공개법」은 이들 문서들이 공적 영역에 속하는 시기, 요건 및 절차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 공적 영역에 속하는 공문서

1) 공문서의 개념

이 법에서 ‘공문서’는 당국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당국 또는 당국에 근무하는 자가 작성한 문서 또는 당국의 권한 또는 임무 내의 사항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당국에 제출된 문서를 의미한다(법 제5조 제2항 전단). 문서가 당국의 위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당국이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위임의 수행을 위하여 당국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당국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법 제5조 제2항 후단).

여기서 ‘문서’는 서면 또는 시각적인 제시물을 의미하며, 주어진 주제와 관련하여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컴퓨터,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록장치 또는 기타의 기술적 장치들에 의해서만 해독 가능한 표시들로 구성되는 메시지도 포함된다(법 제5조 제1항).

2) 공적영역에 속하는 공문서

당국이 작성한 문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문서의 공개 또는 기밀유지, 정보접근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적 영역(public domain)에 속한다. 다만 아래의 표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문서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공적 영역으로 포섭된다(법 제6조 제1항 각호).

다만, 제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않은 문서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당국이 심리의 결정을 내린 때 공적 영역에 속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보고서, 논문 및 일반인에 대하여 배포할 의도로 작성된 기타 유사한 문서들은 당국이 배포를 위하여 점유한 때 공적 영역에 속한다.(법 제6조 제2항).

법률 문서 또는 기타의 문서가 발행되는 경우, 당국은 필요한 경우 그것이 공적 영역에 속하기 이전에 서류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3항).

<표 6> 공문서가 공적 영역에 속하는 시점 및 공적 영역에 속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법 제6조)

분 류	공적 영역에 속하는 시점 / 또는 공적 영역에서 속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①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일지에 대한 기재 또는 유사한 기록	- 작성시 - 단, 검사가 작성하는 일지 상의 피의자에 관한 정보는 소환 청구 또는 검사의 소환장에 서명이 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확인된 후 또는 검사가 기소 유예 결정을 하거나 사안이 종결된 후에야 공적 영역에 속함
② ③ 및 ④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보제공 또는 논평을 위한 안내장, 제안서, 탄원서등(부록 포함)	- 서명된 때 또는 다른 동등한 방식으로 승인된 때
③ 용역 또는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의거한 기타의 계약과 관련이 있는	- 계약이 체결된 때

분 류	공적 영역에 속하는 시점 / 또는 공적 영역에서 속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경우, 제공에 부수되는 정보 및 그러한 제공을 고려하기 위하여 준비된 기타의 의견 및 작성된 문서	
④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권한의 범위 내의 예산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장관이 예산안에 가장 먼저 서명한 때 - 그 후 다른 부처들이 재무부 장관에게 송부한 예산안 및 예산안에 포함된 다른 발의들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
⑤ 일관된 전체를 형성하며, 중요한 결정이나 계획에 대한 대안, 이유,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 및 통계 기타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되지 않은 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목적에 합당한 때 공적 영역에 속함
⑥ 의사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항의 준비 또는 당국의 내부적 사용을 위하여 보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토 및 서명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승인되는 때
⑦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고된 때 또는 양 당사자에게 유효하게 되는 때
⑧ 당국의 결정, 발표, 법률 문서, 계약 및 ①-③ 또는 ⑤-⑦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망록, 의사록 및 기타의 문서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 발표, 문서 또는 계약이 서명된 때 또는 상응하는 방식으로 승인된 때
⑨ ①-③ 또는 ⑤-⑦에 규정되지 않은 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이 관련 사항에 대한 심리의 결정을 내린 때
⑩ 위원회의 보고서, 논문 및 일반인에 대하여 배포할 의도로 작성된 기타 유사한 문서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이 배포를 위하여 점유한 때

(2) 당국에 제출된 문서로서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것

「정부활동공개법」은 공문서가 아닌 문서라 할지라도 그 문서가 당국에 제출된 경우, 일정한 시기에 공적 영역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제2항 전단, 법 제6조).

첫째, 이 법 또는 다른 법에서 문서의 공개 또는 기밀유지, 정보접근의 제한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안의 심리를 위해 제출되거나, 그 관할 내지 의무에 속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당국에 전달된 문서는 당국이 그것을 수령한 때 공적 영역에 속한다(법 제7조 제1항).

둘째, 일정한 시기에 공개되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공개되는 전문가 의견 및 기타의 문서들은 제1항에서 정한 제한에 따라 공개된 이후에 공적 영역에 속한다.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근거하여 당국에 제출된 조달, 용역 및 기타의 입찰은 제1항에서 정한 제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 공적 영역에 속한다(법 제7조 제2항).

셋째, 기밀 규칙 또는 접근에 대한 기타의 규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장치에 의해서만 관독이 가능한 문서는 빨라도 당국 또는 당국의 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는 때 공적 영역에 속한다(법 제7조 제3항).

3. 문서의 일반적인 공표

국민경제의 발전에 관한 통계자료,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자본 및 금융 시장에 대하여 명백하게 영향력을 갖는 기타의 유사한 문서들은 제6조 및 7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후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공표되어야 한다(법 제8조).

4. 비공개정보

(1) 공문서가 아닌 것

「정부활동공개법」은 작성주체가 당국이거나, 당국에 제출된 문서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 공문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첫째, 수령인이 수행하는 다른 업무 또는 수령인이 보유하는 다른 직위 때문에 공무원에게 전달된 서신 또는 기타의 문서, 둘째, 공무원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보유하는 메모 및 발표 또는 다른 심리를 위하여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안, 셋째, 당국의 연수, 정보검색 또는 기타 유사한 내부 활동을 위한 문서, 넷째, 민간 당사자를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국에 제출되거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 다섯째, 분실물로 당국에 맡겨지거나 제출된 문서 등은 공문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법 제5조 제3항).

이 중에서 ②공무원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보유하는 메모 및 발표 또는 다른 고려를 위하여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안, ④민간 당사자를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국에 제출되거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는 기밀 문서로 취급되어 기밀문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법 제5조 제5항).

이렇게 공적 영역에 속하지 않는 문서에 대한 접근은 당국의 재량에 의하여 허용될 뿐이다(법 제9조 제2항). 그러나 당국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즉, 당국은 당국의 활동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을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되며, 보호되는 개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제한해서도 안된다. 또한 당국은 접근을 신청하는 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2) 기밀 공문서

1) 기밀문서

공문서는 「정부활동공개법」 또는 다른 법에 기밀로 규정된 경우, 법에 의하여 당국이 기밀이라고 선언한 경우, 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의무의 적용을 받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기밀이 된다(법 제22조 제1항). 「정부활동공개법」은 다음과 같이 기밀인 공문서를 32가지에 걸쳐 열거하고 있다(법 제24조 제1항 각호).

다만, 각각의 분류마다 기밀이 되기 위한 요건과, 기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당국은 문서의 기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밀 의무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접근의 결과와 무관한가(엄격한 기밀), 문서에 대한 접근이 접근의 부정적인 결과에 근거하는가(추정적 접근에 의거한 기밀), 문서에 대한 접근이 명백하게 접근으로 인한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도 없을 것을 요하는가(추정적 기밀에 의거한 기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한편, 문서의 일부만 기밀인 경우 기밀인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하고는 접근이 가능한 때에는 문서의 공적 부분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다(법 제10조).

<표 7>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상 기밀인 공문서(법 제24조 제1항 각호)

분 류	기밀 요건 또는 기밀 제외 요건
① 정부 외교통상위원회의 문서, 외무부 장관의 정치적 평가, 외국과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협상 관련 문서 및 외무 행정 분야의 암호화된 메시지(장관이 달리 결정할 수 있음)	- 단, 위원회나 장관이 공개할 수 있음

분 류	기밀 요건 또는 기밀 제외 요건
<p>② 핀란드와 외국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관한 ①에 규정된 것 이외의 문서, 국제 재판소, 국제 조사기구 또는 기타의 국제기관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문서, 외국의 당국, 자연인 또는 법인과 핀란드 공화국, 핀란드 시민, 핀란드 주민 또는 핀란드에서 영업하는 법인의 관계에 관한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에 대한 접근이 핀란드의 국제 관계 또는 국제협력에 참여할 핀란드의 능력을 해치거나 손상시킬 수 있을 것을 요구함.
<p>③ (i) 범죄수사를 수행하는 경찰 기타 당국, 검사, 조사와 감독에 관한 책임은 지는 당국에 대하여 작성하는 범죄 보고서. (ii) 범죄수사 또는 기소여부 결정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작성된 문서 및 소환 신청서, 소환장 및 피고인의 답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i)의 경우 사건 심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거나,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사건이 폐기될 때까지 작성되어야 함 - 문서에 대한 접근이 범죄사건의 해결, 수사목적의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함. 또한 당사자에 피해 또는 고통을 야기한다는 절박한 이유가 없어야 함. 그리고 법원절차의 공개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문서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할 법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p>④ 범죄 예방 및 범죄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범죄수사를 수행하는 경찰 및 기타의 당국이 유지하는 기록물, 범죄 예방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 신원 및 여행할 권리를 결정하거나 조사하기 위한 행정절차에서 취득된 사진 및 기타의 신원확인 정보, 어떠한 자에 대하여 발행된 특수한 신원증명 코드 또는 신분증명서 또는 여행증서</p>	
<p>⑤ 경찰, 국경수비대, 세관, 교정당국의 전술적 및 기술적 계획 및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에 대한 접근이 범죄의 예방, 범죄사건의 해결 또는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형법제도의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제 3 장 정보공개법제

분 류	기밀 요건 또는 기밀 제외 요건
⑥ 접근이 문제 해결을 저해하거나 당사자에 대한 피해 또는 고통을 야기할 절박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고소 사건에 관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고소인에 관계되는 문서	
⑦ 사람, 건물, 시설, 구조물, 데이터 및 통신 시스템의 보안계획의 실현과 관련이 있거나 그것에 영향을 주는 문서	- 문서에 대한 접근이 보안계획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⑧ 사건 및 비상사태, 민방위 및 사건 수사와 관련된 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에 대한 접근이 안전, 민간 방위의 실현,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를 침해하거나, 사건 수사를 방해시키거나 피해자의 권리 또는 기억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자에게 고통을 야기해야 함. - 접근 허가나 공적인 업무 수행 목적을 위한 필요성이 없어야 함
⑨ 비밀경찰 및 기타의 당국의 국가안전 유지에 관한 문서	- 문서에 대한 접근이 국가 안전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함
⑩ 군사기밀, 군대의 물품, 조직, 위치 및 작전, 국가의 무장 방어물 또는 기타의 방어물에 사용된 발명품, 시설, 설비 및 시스템,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타의 사항, 방어준비접근이 에 관한 문서	- 문서에 대한 접근이 국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손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함
⑪ 통화정책 또는 외환정책에 있어서의 결정, 조치 또는 준비, 금융정책, 소득 정책, 통화정책 또는 외환정책 분야의 결정이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금융 또는 소득 정책의 준비 또는 조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 문서에 대한 접근이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국가의 이익에 반하거나, 결정이나 조치의 목적 달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금융, 통화 또는 외환정책의 적절한 수행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여야 함

분 류	기밀 요건 또는 기밀 제외 요건
⑫ 시장기능, 금융기관, 보험기관, 연금 기관 또는 그 소비자들을 포함하여 금융 시장 및 보험 운영자 및 금융시장과 보험시스템의 기능을 담당하는 당국을 감독하는 당국의 제정법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	- 문서에 대한 접근이 금융시스템 또는 보험시스템의 신용 또는 기능을 침해 하거나 손상하게 될 수 있는 경우 여야 함
⑬ 국민경제에 관한 통계, 금융정책 이니셔티브, 운영계획 및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명백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기타의 문서로서 제8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연하게 배포 되기 이전의 문서	
⑭ 멸종위기의 동물 또는 식물 종, 중요한 자연서식지의 보호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하는 문서	- 문서에 대한 접근이 종 또는 서식지의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⑮ 당국의 조사 또는 기타의 감독 업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 문서에 대한 접근이 조사 또는 목적의 달성을 침해하는 경우이거나 절박한 이유 없이 당사자에게 피해 또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여야 함
⑯ 조사 및 통계를 위한 기본 자료	- 조사 또는 통계 작업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당국에 자발적으로 제출되는 경우여야 함
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의 공기업 또는 기업, 기관 또는 재단의 영업 또는 직업적인 비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 문서에 대한 접근이 기업, 기관 또는 재단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 거나 동일한 활동 또는 경쟁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또 다른 공기업 또는 개인의 경쟁적인 지위를 향상 시키거나 제4조 제2항의 공기업 또는 기업, 기관 또는 재단이 유리한 조건으로 알선, 투자, 자금조달 또는 채무변제를 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여야 함

제 3 장 정보공개법제

분 류	기밀 요건 또는 기밀 제외 요건
<p>⑱ (i)국가, 지방자치단체, 노동 파트너 또는 노동쟁의 당사자로서 기타의 공기업이 수집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ii)농업 보조금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국가의 대리인이 수집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의 경우 접근이 고용주로서 공기업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ii)의 경우 문서에 대한 접근이 협상 당사자로서 국가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p>⑲ 재판을 준비할 목적으로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의 역할을 하는 당국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에 대한 접근이 재판에서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공법인, 법인 기관, 재단 또는 개인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p>⑳ 사업 또는 직업적인 비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및 기타의 유사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에 대한 접근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단, 정보가 소비자의 건강 보호 또는 환경 보전 또는 영업의 수행으로부터 고통 받는 자들의 이익 증진과 관련이 없는 경우여야 하며, 기업의 의무 및 의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여야 함.
<p>㉑ 논문 또는 기타의 과학적 연구, 기술적 또는 기타의 개발 프로젝트 또는 그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에 대한 접근이 논문, 연구 또는 개발 프로젝트의 완성 또는 그 개발, 적절한 평가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자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연구 또는 개발 프로젝트를 위임하는 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
<p>㉒ 입학시험 또는 기타의 시험 또는 시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에 대한 접근이 검사 또는 시험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거나 장래의 시험의 시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

분 류	기밀 요건 또는 기밀 제외 요건
<p>㉓ 어떠한 자의 연간수입 또는 순자산에 관한 자료, 보조금 또는 수익의 근거가 되는 수입 및 자산에 관한 자료 또는 그 자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를 포함하는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집행신청, 집행결정 및 집행절차에 관한 소송기록은, 채무자의 자산 및 유동성 평가에 관한 소송기록을 제외하고는 공적 영역에 속함
<p>㉔ 망명자 또는 망명을 요청하는 자, 거주승인 또는 비자에 관한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에 대한 접근이 망명자, 신청자 또는 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함.
<p>㉕ 복지 수급인 또는 노동 관리의 개별 고객, 수당, 지원조치,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에게 부여되는 개별 고객에 대한 노동관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어떠한 자의 건강상태 또는 불리한 조건, 그에게 부여되는 의료 또는 치료에 관한 정보, 그의 성적 행동 및 선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60/2002
<p>㉖ 범죄 용의자, 피해자 또는 형사 문제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자의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범죄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에 대한 접근이 피해자의 권리 또는 기억을 침해하거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여야 함. - 문서에 대한 접근의 허용이 공식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p>㉗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성격검사 또는 구금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봉사활동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제 3 장 정보공개법제

분 류	기밀 요건 또는 기밀 제외 요건
<p>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재소자 또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적 문서 및 기록</p>	<p>- 문서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장래의 생계, 사회복귀 또는 안전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함.</p>
<p>㉙ 어떠한 자에 대한 심리검사 또는 적성검사 또는 그 결과에 관한 정보, 징집병의 할당에 대한 평가, 피고용인의 선발 또는 급여의 기준 설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p>㉚ 학생복지 및 교육면제, 학생과 수험생의 시험결과, 학교 졸업장에 관한 문서,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구두의 평가를 포함하는 기타의 문서, 입학자격시험 수험생을 내는 학교들 가운데 대학입학자격시험위원회(Matriculation Examination Board)의 중재 부서를 나타내는 문서.</p>	<p>- 문제의 시험 회차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p>
<p>㉛ 어떠한 자에 의하여 부여된 비밀전화번호에 관한 정보 또는 모바일 통신 장치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개인의 주소, 거주지 또는 일시적인 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기타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p>- 해당자가 정보에 대하여 기밀유지 요청을 하고 자신의 건강, 안전 또는 가족의 건강, 안전이 위협에 빠져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여야 함. - 1151/2001</p>
<p>㉜ 어떠한 자의 정치적 신념 또는 사적으로 표현된 견해에 관한 정보, 생활 방식, 자발적 단체에의 참여, 관심, 가족 생활 기타 유사한 개인적 환경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p>- 단, 정치적 활동 또는 기타의 선출직 사무소에서의 활동, 그러한 사무소를 찾는 것과 관련된 정보, 정당의 설립 또는 등록에 대한 참여, 선거협회 설립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는 공적 영역에 속함</p>

2) 기밀 공문서에 대한 접근 등 제한

① 기밀 공문서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

이 법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문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접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법 제10조, 법 제22조 내지 제23조). 특히 기밀 공문서, 그 사본 또는 출력정보는 기술적 인터페이스에 의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제시되거나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법 제22조 제2항).

② 공무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일반직 공무원 및 선출직 공무원은 법에 규정된 비공개 의무의 적용을 받는 경우 문서의 기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밀이 될 수 있는 정보, 근무 중에 취득한 기타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비공개에 관한 규정은 고용관계나 임기가 종료하거나 업무수행이 종료된 후에도 적용된다(법 제23조 제1항).

이러한 제한은 법이나 허가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훈련을 받는 자 또는 기타의 임시 직원,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 등이 기밀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변호인도 당사자의 지위를 이유로 하여 당사자 자신 이외의 다른 자에 관하여 취득한 기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23조 제2항).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자들은 개인적 이익 또는 다른 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자에게 손해를 주기 위하여 기밀 정보를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단, 당사자, 그 대리인 및 변호인은 문제가 당사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의 근거가 되는 권리, 이해 관계 또는 의무에 관한 것인 경우 당사자 자신 이외의 자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법 제23조 제3항).

3) 기밀의 강등 및 해제

① 기밀 해제 등의 요건

「정부활동공개법」은 기밀 공문서라 할지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국의 허가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법 제29조).

㉠ 일반적 요건

기밀 공문서라 할지라도 ①법률에 접근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②기밀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접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국이 기밀 공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1항).

또한 제24조 제1항 제25호에 따른 일정한 타인의 경제적 지위, 영업 또는 직업적 비밀에 관한 정보, 건강관리 및 복지 수급인에 관한 정보, 제25조 제1항 제32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및 다른 법에 의하여 기밀인 유사한 정보에 대하여도 ①정보에 관한 개인 또는 기타 당국의 법적 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접근을 허가하는 당국이 처리해야 하는 지출 또는 기타의 요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접근을 허가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2항).

행정의 지원 또는 당국의 위임에 의하거나 당국을 대신하는 업무의 수행을 요청하는 당국도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접근이 지원 또는 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업무에 대하여 정보의 분량으로 인해 비밀 정보를 제거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가능하거나 기타 유사한 이유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법 제26조 제3항). 이 경우 당국은 사전에 기밀의 정리와 및 정보의 보호가 적절할 것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연구, 통계 등의 목적을 위한 기밀 해제

당국은 문서에 대한 접근이 기밀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사건별로 과학적 연구, 통계적 편찬

또는 공식적인 계획 또는 연구 목적으로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접근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과학적 연구의 자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행하여져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1문).

문서 내의 정보가 기밀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보호를 받는 자의 동의 하에 당국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동의가 내려진 사용 및 접근 조건에 따라서 허가가 내려질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2문).

동일한 부처 내의 다수의 당국들이 소유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허가가 신청되는 경우, 장관은 필요한 경우 당국들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3문).

다만, 이러한 허가에는 기간 제한이 부가되며, 관련 공사의익의 보호를 위한 조건이 부가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법 제28조 제2항).

㉔ 일정한 당국에 대한 기밀정보의 접근허가

당국은 다른 당국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수 있다. 즉,

①법에 접근 또는 접근권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②기밀 규정에 의하여 이익의 보호를 받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 ③사전 조세 평가, 예비판정, 항소 또는 이의제기, 당국의 제출, 당국의 결정, 재판 또는 조사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문제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문서가 필요한 경우, ④당국에 의한 특정 모니터링 또는 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다른 당국에 대한 기밀문서의 접근을 허가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1항 각호)

한편 당국은 제25조 제1항 제31호에 의하여 기밀인 주소 또는 기타의 연락처에 대한 접근을 다른 당국에게 허가할 수도 있다(법 제29조 제2항).

당국은 다른 당국이 특정한 법률상의 의무에 따른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인정보파일시스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당국을 위하여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개방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인터페이스는 동의한 자에 관한 정보 검색에 대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법 제29조 제3항).

④ 외국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밀정보 접근 허가

「정부활동공개법」은 핀란드 당국이 외국 국가의 당국 또는 국제기구에 기밀 공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법률상의 특별규정이 있거나, 핀란드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에 핀란드 당국과 외국 당국 간의 협력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핀란드 정부가 이 법에 의하여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면 기밀 공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수 있다(법 제30조).

IV. 정보공개절차

1. 접근 신청

공문서에 대한 접근 신청은 당국이 어떤 문서가 신청과 관련이 있는 문서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접근을 신청하는 자는 접근이 신청되는 문서를 특정할 수 있도록 당국의 일치 및 색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1문, 2문).

특기할 만한 점은 접근을 신청하는 자가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는 경우 당국의 재량권 행사 또는 결정에 필요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신청 이유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법 제13조 제1항 3문).

그러나 기밀문서, 당국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제출시스템 또는 기타의 문서에 대한 접근, 일정한 조건에 따라야만 허가될 수 있는 접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된다. 즉, 이 경우 접근신청

자는 특별히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사용용도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고 정보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2. 접근여부의 결정

공문서에 대한 접근허가결정은 문서를 소유하는 당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당국이 위임한 문서에 대한 접근허가결정 또는 다른 당국에 의한 위임에서 수행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부되는 문서에 대한 접근허가결정은 위임의 성질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하는 당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법 제14조 제1항).

문서의 내용에 대한 접근은 당국이 지정하거나 그의 직무 또는 임무에 의하여 다른 방식으로 업무가 그에게 속하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에 의하여 허가된다(법 제14조 제2항).

이러한 접근여부의 결정은 지체 없이 검토되어야 하며, 공문서에 대한 접근은 어떠한 경우든 당국이 문서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허가되어야 한다. 신청 문서의 수가 많은 경우, 기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조치 또는 비정상적인 양의 작업을 요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및 결정에 대한 다른 유사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국이 접근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에 대한 접근이 결정 승인되어야 한다(법 제14조 제4항).

3. 접근허가의 방식

공문서에 대한 접근은 신청자에 대하여 구두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당국 사무소에서 검토, 복사 또는 청취하도록 문서를 교부하거나, 문서의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문서의 공적 내용에 대한 접근은 문서의 분량 때문에 당국의 활동이

불합리하게 불편하고 본질적으로 복사가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청된 방식으로 허가되어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당국의 결정을 전산화하여 등록한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기매체 또는 다른 전자적 형태로 사본을 발부함으로써 제공되어야 한다. 다른 공문서 상의 정보에 대한 유사한 접근은 법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국의 재량에 의한다(법 제16조 제2항).

접근을 신청하는 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기록 및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법에 특별히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접근은 사본 또는 출력물의 형태로 당국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제출 시스템 또는 시스템 내용의 전자적 형태의 사본으로 허가될 수 있다. 단, 직접매매의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설문조사 또는 시장조사는 특별히 달리 규정되거나 정보의 대상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법 제16조 제3항).

4. 이 송

다른 당국이 작성하였거나 다른 당국의 검토 하에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서에 대하여 접근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은 문서를 작성한 당국 및 전체적으로 문제에 대한 검토의 책임을 지는 당국이 취급하는 것으로 이송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다른 당국에 의한 공공 이용을 위하여 등록되는 개인, 비즈니스, 부동산 또는 차량데이터 기타 유사한 표식 또는 주소 정보에 대하여 접근이 신청되는 경우 신청은 적절한 등록 당국의 검토를 위하여 이관될 수 있다(법 제15조 제2항).

5. 접근 거부의 통지

공무원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타의 자가 신청된 접근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접근 신청자에게 ①거부사유, ②자신이 당국에 의하여 결정

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③서면 접근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신이 그 당국에 전송된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또한 ④접근 신청자에게 신청에 대한 검토와 관련된 수수료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3항).

6. 부분 공개

문서의 일부만 기밀인 경우 기밀인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도도 접근이 가능한 때에는 문서의 공적 부분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다(법 제10조).

7. 비용부담

문서의 복사, 출력의 형태로의 정보접근, 기술적 인터페이스 또는 전자적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정보에 대한 접근 지원, 당국이 제공한 서비스의 검색 및 전달에 대하여는 다른 곳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다른 접근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법 제34조).

V. 불복절차

당국의 결정은 「행정소송절차법(Act on Administrative Judicial Procedure)」(법률 1996년 제586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소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절차법」 제7조에 열거된 것 이외의 당국의 결정은 최고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에 상소된다. 단,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 당국의 결정 및 기관, 법인, 재단 또는 개인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행정소송절차법 제12조에 의한 관할권을 가지는 행정법원에 제기된다(법 제33조 제1항).

사건 당사자가 계속 중인 재판에 관련된 문서에 대한 접근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원의 명령은 주요 문제에 있어 상소절차에 따라

상소의 대상이 된다. 또한 「법원절차의 공개에 관한 법(Act on the Openness of Court Proceedings)」에 관한 규정들도 상소권에 적용된다 (법 제33조 제2항).

VI. 제3자의 보호

「정부활동공개법」은 정보 공개 또는 기밀제한의 해제에 있어 관련 정보의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제3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법 제16조 제3항, 제26조 제1항 2호,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2호)

제 4 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시사점

제 1 절 한국의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I.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며(법 제5조 제1항), 정보공개청구권자에는 자연인 뿐만아니라 법인, 권리능력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해관계 없는 시민단체도 공익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⁵³⁾

외국인 중에서도 첫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둘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자

근 거	분 류	범 위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모든 국민	1) 자연인 2) 법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동법시행령 (제3조)	외국인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3)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II. 공개의 대상

1. 대상 기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각급 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 사회복지법인, 일정액 이상의 정부보조금 지원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다(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근 거	분류 및 범위	
정보공개 청구법 (제2조 3호)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법」상의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정부투자기관
동법 시행령 (제2조)	각급 학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지방자치단체	투자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 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2. 대상 정보

정보공개 대상은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의미한다(법 제3조, 제2조제1호). 문서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며, 그 밖에도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일부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사전공표의무도 인정된다(법 제7조). 즉, ①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④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3. 비공개정보

정보공개청구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도(법 제9조 제1항 본문), 비공개대상 정보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호).

제1호를 제외하고는, “공개될 경우 일정한 법익이 침해될 것”을 비공개 요건으로서 규정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10>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법 제9조제1항 단서 각호)

분 류	비고(추가요건 또는 예외요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단, 위임명령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함

제 4 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시사점

분 류	비고(추가요건 또는 예외요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함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
6. 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 * 비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분 류	비고(추가요건 또는 예외요건)
	<p>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p> <p>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p> <p>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p>
<p>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p>	<p>*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함</p> <p>* 비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p> <p>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Ⅲ. 정보공개절차

1.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①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해야 한다(법 제10조 제1항).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법 제 10조 제2항).

2. 공개여부의 결정

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1항).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제11조 제2항).

3. 이 송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

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4항).

4.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제13조 제4항).

5. 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14조).

6.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제17조 제1항). 단,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IV. 불복절차

1.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1항).

단,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법 제19조 제2항) 이의신청이 필수적 절차는 아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8조 제3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법 제18조 제4항).

2.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1항).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법 제19조 제2항).

3.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20조 제1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법 제20조 제2항).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비공개 대상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법 제20조 제3항).

V. 제3자의 보호

공공기관은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 제11조 제3항).

이 경우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1항).

이러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21조 2항).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법 제21조 제3항).

제 2 절 한국과 핀란드 정보공개법제의 비교

이상 살펴본 한국의 「정보공개청구법」과 핀란드의 「정부활동공개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청구권자의 경우, 양 법률 모두 개인뿐만아니라 법인도 청구권자에 포함시키나,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3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청구권자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한국의 「정보공개청구법」과 달리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은 ‘외국인’에게 접근권을 허용할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공대대상 기관의 범위의 경우, 핀란드의 「정부활동공개법」은 법, 명령 등에 의거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법인, 기관, 재단 및 개인이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대상기관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보공개청구법」에 비해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핀란드의 「정부활동공개법」은 ‘각급 학교’를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핀란드의 「정부활동공개법」은 스웨덴인들의 자치지구인 올란드(Åland)의 행정기관, 국가기관, 및 복음주의 루터교(Evangelical Lutheran Church)도 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핀란드에서 일반적인 행정기관 이외에 교회를 포함시킨 것은 핀란드의 루터교회와 러시아정교회가 신자로 등록된 봉급생활자의 급여에서 매월 1~2.25%의 교회세를 거두어 운영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비록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준조세에 해당하는 교회세를 거두기 때문에, 준조세 집행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⁵⁴⁾

셋째, 양 법률이 규정한 공개대상의 범위는 유사하다. 다만, 한국의 「정보공개청구법」이 공개대상 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매체의 범위만을 명시한 것과 달리, 핀란드의 「정부활동공개법」은 공개대상인 공문서의 목록을 상세히 예시하고, 그 정보가 ‘공적 영역’에 속해야 접근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공적 영역에 속하는 시기, 요건, 절차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공개의 대상인 공문서의 종류, 공개의 대상이 되는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보다 관심을 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핀란드의 「정부활동공개법」은 공문서가 아닌 문서라도 당국에 제출된 경우, 공적 영역에 속한다면 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정보공개청구법」보다 공개범위가 넓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비공개대상 정보의 경우, 양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의 범위가 일부 중첩되나, 핀란드의 「정부활동공개법」이 기밀 공문서의 범위와 기밀의 요건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정보공개청구법」이 “공개될 경우 일정한 법익이 침해될 것”을 비공개요건의 요건으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유사하게, 핀란드의 「정부활동공개법」역시 기밀의 요건 및 기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핀란드는 비공개대상인 정보의 범위와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국민이 공개대상인 정보의 범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섯째, 정보공개절차에 있어서는 신청방법을 제외한 공개방법, 부분 공개가부,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사전공표, 공개기한, 비용부담

54) 심영섭, 앞의 글, 48면.

등에 있어 양 법률간에 의미있는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신청방법에 있어서는 양 법률간에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즉, 한국의 「정보공개청구법」은 서면 또는 구두로 공개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상세히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구두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달리 핀란드의 「정부활동공개법」은 접근을 신청하는 자가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신청 이유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차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차이라고 할 것이다.

여섯째,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한국의 「정보공개청구법」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를 규정한 반면, 핀란드의 「정부활동공개법」은 행정소송절차법에 의한 상소만을 규정하고 있다.

<표 11> 한국과 핀란드 정보공개법제의 비교

구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
공개 청구 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민(법 제5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인 2) 법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외국인 포함(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영역에 속한 공문서에 접근할 권리(법 제9조 제1항) → 모든 사람(개인, 법인 포함) • 공적영역에 속하지 않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법 제11조 제1항) → 당사자(즉, 자신의 권리, 이익 또는 의무가 당해 사안과 관련된 신청인, 항고인 등) • 공문서에 포함된 자신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법 제12조) → 모든 개인
공개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국가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②지방자치단체 ③「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 ④각급 학교 ⑤지방자치단체 투자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법 제4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국가 행정기관 및 기타의 국가 기관 ②법원 및 기타의 법 집행기관 ③국영기업 ④지방자치단체 ⑤금융감독기관, 국민연금기관을 포함한 핀란드 은행 및 공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의 독립적인 기관 (연금보안센터 및 농업연금연구소의 문서 포함) ⑥의회의 기관 ⑦스웨덴인들의 자치지구인 올란드(Åland)의 행정기관과 올란드 내에 설치된 국가기관

제 4 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시사점

구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
공개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 ⑦사회복지법인 ⑧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⑧독립적인 위원회, 협의체, 위원회, 실무단, 조사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지방자치단체 연합 및 법, 명령 또는 ①, ②, ⑦ 등에서 정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거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기타의 유사한 기관들이 포함 ⑨법, 명령 등에 의거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법인, 기관, 재단 및 개인(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⑩복음주의 루터교(Evangelical Lutheran Church)
공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법 제3조, 제2조제1호) - 전자문서가 포함되며, 그 밖에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영역에 속하는 공문서 (법 제6조 제1항 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일지에 대한 기재 또는 유사한 기록 ②③ 및 ④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보제공 또는 논평을 위한 안내장, 제안서, 탄원서등(부록 포함) ③용역 또는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의거한 기타의 계약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공에 부수되는 정보 및 그러한 제공을 고려하기 위하여 준비된 기타의 의견 및 작성된 문서 ④정부 부처 및 기관의 권한의 범위 내의 예산발의 ⑤일관된 전체를 형성하며, 중요한 결정이나 계획에 대한 대안, 이유,

구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
공개 대상		<p>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 및 통계 기타의 의견</p> <p>⑥의사록</p> <p>⑦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p> <p>⑧당국의 결정, 발표, 법률 문서, 계약 및 ①-③ 또는 ⑤-⑦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망록, 의사록 및 기타의 문서들</p> <p>⑨①-③ 또는 ⑤-⑦에 규정되지 않은 문서</p> <p>⑩위원회의 보고서, 논문 및 일반인에 대하여 배포할 의도로 작성된 기타 유사한 문서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에 제출된 문서로서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것(법 제5조 제2항 전단, 법 제6조) • 일반적으로 배포해야 할 문서(법 제8조)
비공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①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③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사항 ④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⑤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밀 공문서(법 제24조 제1항 각호) ①정부 외교통상위원회의 문서, 외무부장관의 정치적 평가, 외국과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협상 관련 문서 및 외무행정 분야의 암호화된 메시지(장관이 달리 결정할 수 있음) ②핀란드와 외국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관한 ①에 규정된 것 이외의 문서, 국제 재판소, 국제 조사기구 또는 기타의 국제기관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문서, 외국의 당국, 자연인 또는 법인과 핀란드 공화국, 핀란드

제 4 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시사점

구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
비공개 정보	<p>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p> <p>⑥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p> <p>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p> <p>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p>시민, 핀란드 주민 또는 핀란드에서 영업하는 법인의 관계에 관한 문서</p> <p>③(i) 범죄수사를 수행하는 경찰 기타 당국, 검사, 조사와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는 당국에 대하여 작성하는 범죄 보고서.</p> <p>(ii) 범죄수사 또는 기소여부 결정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작성된 문서 및 소환신청서, 소환장 및 피고인의 답변서</p> <p>④ 범죄 예방 및 범죄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범죄수사를 수행하는 경찰 및 기타의 당국이 유지하는 기록물, 범죄예방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 신원 및 여행할 권리를 결정하거나 조사하기 위한 행정절차에서 취득된 사진 및 기타의 신원확인 정보, 어떠한 자에 대하여 발행된 특수한 신원증명 코드 또는 신분증명서 또는 여행증서</p> <p>⑤ 경찰, 국경수비대, 세관, 교정 당국의 전술적 및 기술적 계획 및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p> <p>⑥ 접근이 문제 해결을 저해하거나 당사자에 대한 피해 또는 고통을 야기할 절박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고소 사건에 관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고소인에 관계되는 문서</p> <p>⑦ 사람, 건물, 시설, 구조물, 데이터 및 통신 시스템의 보안계획의 실현과 관련이 있거나 그것에 영향을 주는 문서</p>

제 2 절 한국과 핀란드 정보공개법제의 비교

구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
비공개 정보		<p>⑧사건 및 비상사태, 민방위 및 사건수사와 관련된 문서</p> <p>⑨비밀경찰 및 기타의 당국의 국가안전유지에 관한 문서</p> <p>⑩군사기밀, 군대의 물품, 조직, 위치 및 작전, 국가의 무장 방어물 또는 기타의 방어물에 사용된 발명품, 시설, 설비 및 시스템,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타의 사항, 방어준비접근이 에 관한 문서</p> <p>⑪통화정책 또는 외환정책에 있어서의 결정, 조치 또는 준비, 금융 정책, 소득정책, 통화정책 또는 외환정책 분야의 결정이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금융 또는 소득 정책의 준비 또는 조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p> <p>⑫시장기능, 금융기관, 보험기관, 연금기관 또는 그 소비자들을 포함 하여 금융시장 및 보험 운영자 및 금융시장과 보험시스템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감독하는 당국의 제정법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p> <p>⑬국민경제에 관한 통계, 금융정책 이니셔티브, 운영계획 및 자본 시장과 금융시장에 명백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기타의 문서로서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연하게 배포되기 이전의 문서</p> <p>⑭멸종위기의 동물 또는 식물 중, 중요한 자연서식지의 보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제 4 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시사점

구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
비공개 정보		<p>⑮당국의 조사 또는 기타의 감독 업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p>⑯조사 및 통계를 위한 기본 자료</p> <p>⑰국가, 지방자치단체,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의 공기업 또는 기업, 기관 또는 재단의 영업 또는 직업적인 비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p>⑱(i)국가, 지방자치단체, 노동 파트너 또는 노동쟁의 당사자로서 기타의 공기업이 수집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ii)농업 보조금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국가의 대리인이 수집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p>⑲재판을 준비할 목적으로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의 역할을 하는 당국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p> <p>⑳사업 또는 직업적인 비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및 기타의 유사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p>㉑논문 또는 기타의 과학적 연구, 기술적 또는 기타의 개발 프로젝트 또는 그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에 관한 문서</p> <p>㉒입학시험 또는 기타의 시험 또는 시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p>㉓어떠한 자의 연간수입 또는 순자산에 관한 자료, 보조금 또는 수익의 근거가 되는 수입 및 자산에 관한 자료 또는 그 자의 경제</p>

제 2 절 한국과 핀란드 정보공개법제의 비교

구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
비공개 정보		<p>상황을 나타내는 자료를 포함하는 문서.</p> <p>㉔망명자 또는 망명을 요청하는 자, 거주승인 또는 비자에 관한 문서</p> <p>㉕복지 수급인 또는 노동 관리의 개별 고객, 수당, 지원조치, 사회 복지사업 또는 그에게 부여되는 개별 고객에 대한 노동관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어떠한 자의 건강 상태 또는 불리한 조건, 그에게 부여되는 의료 또는 치료에 관한 정보, 그의 성적 행동 및 선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p>㉖범죄 용의자, 피해자 또는 형사 문제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자의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범죄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p>㉗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성격검사 또는 구금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봉사활동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p>㉘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 재소자 또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적 문서 및 기록</p> <p>㉙어떠한 자에 대한 심리검사 또는 적성검사 또는 그 결과에 관한 정보, 징집병의 할당에 대한 평가, 피고용인의 선발 또는 급여의 기준 설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제 4 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시사점

구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
비공개 정보		<p>㉔학생복지 및 교육면제, 학생과 수험생의 시험결과, 학교 졸업장에 관한 문서,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구두의 평가를 포함하는 기타의 문서, 입학자격시험 수험생을 내는 학교들 가운데 대학 입학자격시험위원회(Matriculation Examination Board)의 중재 부서를 나타내는 문서.</p> <p>㉕어떠한 자에 의하여 부여된 비밀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 또는 모바일 통신장치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개인의 주소, 거주지 또는 일시적인 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기타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p>㉖어떠한 자의 정치적 신념 또는 사적으로 표현된 견해에 관한 정보, 생활방식, 자발적 단체에의 참여, 관심, 가족생활 기타 유사한 개인적 환경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p>
정보 공개 절차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법 제10조) • 서면의 경우 ①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해야 함 • 구두의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을 신청하는 자가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는 경우, 당국의 재량권 행사 또는 결정에 필요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신청 이유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법 제13조 제1항 3문). • 다만, 기밀문서 등에 대한 접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 정보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설명해야 함(법 제13조 제2항).

구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
정보 공개 절차	<p>공개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법 제2조제2호) • 사본교부(법 제2조제2호) • 전자적 공개(법 제2조제2호, 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에게 구두로 내용을 설명하고 검토, 복사 또는 청취되도록 서류를 교부하거나, 사본 또는 출력물을 발행함. 문서의 분량으로 인해 복사가 곤란하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신청된 방식대로 허가해야 함(법 제16조 제1항) • 당국의 결정을 전산화한 공공정보의 경우는 자기매체 또는 전자적 형태의 사본을 발부하여 제공(법 제16조 제2항) • 접근이 허용되는 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접근은 사본 또는 출력물, 전자적 형태의 사본으로 접근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법 제16조 제3항)
	<p>부분 공개 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의무 -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가능 - 문서의 일부만 기밀인 경우, 기밀인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하고도 접근이 가능한 때에는 문서의 공적 부분에 대한 접근이 허용(법 제10조).
	<p>정보 공개 여부 결정 의 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결정시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법제13조제1항) • 비공개결정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 제13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거부결정시 ①거부사유, ② 자신이 당국에 의하여 결정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③서면 접근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신이 그 당국에 전송된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야 함. ④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통지하여야 함(법 제14조 제3항)
	<p>사전 공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의무 규정 ①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의 일반적 공표규정 존재 - 국민경제의 발전에 관한 통계자료,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자본 및

제 4 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시사점

구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
정보 공개 절차	사전 공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④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법 제7조 제1항).	금융 시장에 대하여 명백하게 영향력을 갖는 기타의 유사한 문서들은 제6조 및 7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후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공표되어야 함(법 제8조).
	공개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까지 연장 • 공개결정 간주규정 없음(현행법에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 • 신청 문서의 수가 많은 경우, 기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조치 또는 비정상적인 양의 작업을 요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결정에 대한 다른 유사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연장 가능(법 제14조 제4항)
	비용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범위에서 청구인 부담(법 제1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의 복사, 출력의 형태로의 정보접근, 기술적 인터페이스 또는 전자적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정보에 대한 접근 지원, 당국이 제공한 서비스의 검색 및 전달에 대하여는 수수료 부과(법 제34조)
불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 이내 이의신청(법 제18조 제1항).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법 제18조제2항) •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 가능(법 제19조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소송절차법에 의한 상소(법 제33조)

제 2 절 한국과 핀란드 정보공개법제의 비교

구분	한국 정보공개청구법	핀란드 정부활동공개법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청구된 사실의 통보(법 제11조 제3항), 3일 이내에 공개거부 요청 가능(법 제21조제1항) • 공개사실의통지 및 행정쟁송(법 제21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공개 또는 기밀제한의 해제에 있어 관련 정보의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함(법 제16조 제3항, 제26조 제1항 2호,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2호).

제 5 장 결 론

분명히 양국의 정보공개법의 체계와 내용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보공개관련 법률의 문언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양국 간의 제도의 우열을 가늠하기 어렵다. 핀란드의 「정부활동공개법」이 한국의 「정보공개청구법」에 비해 공개 또는 비공개인 정보의 범위를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청구의 절차도 완화하여 국민의 공개청구를 용이하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법률 때문에 핀란드에서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스웨덴 식민지배시기부터 이어져 100여 년간 내려오는 정보공개 전통, 행정정보공개제도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의회옴부즈만(Parliamentary Ombudsman, 핀란드 헌법 제109조)⁵⁵⁾의 역할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오늘날 핀란드의 정보공개제도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한국의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함에 있어도 이러한 핀란드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사후관리절차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핀란드에서는 자신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비판(예컨대 DVD, CD-ROM 복제용의 과다 책정, 상업적 목적의 정보공개청구의 문제 등)⁵⁶⁾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핀란드의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55) 핀란드 의회 옴부즈만 홈페이지(<http://www.oikeusasiamies.fi/>, 최종방문일: 2015.10.27)
참조

56) 심영섭, 앞의 글, 50면.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곽기성, 세계의 언론법제 정보공개와 언론, 한국언론재단, 2008년 상권, 통권 23호.

심영섭, “북유럽 국가의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와 언론보도』, 2008조사분석 워크숍, 한국언론재단, 2008.5.14.

웹사이트

2013년 핀란드 옴부즈만 연례 보고서; <http://www.oikeusasiatamies.fi>
(최종방문일: 2015.10.30)

Finland's Action Plan on Open Government :
<http://www.opengovpartnership.org/country/finland/comment-report/2013-2014-finland-progress-report-public-comments-section>
(최종방문일: 2015.10.30)

FINLAND : Open Government Action Plan 2015-2017 :
<http://www.opengovpartnership.org/country/finland/action-plan>
(최종방문일: 2015.10.30)

Open Government partnership: Finland's self-assessment report :
(최종방문일: 2015.10.30)

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FINLAND PROGRESS
REPORT 2013 - 14 :
<http://www.opengovpartnership.org/blog/independent-reporting-mechanism/2015/01/30/invitation-comment-progress-reports-costa-rica>
(최종방문일: 2015.10.30.)

부 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공개 청구 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국민(법 제5조 제1항) 1) 자연인 2) 법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외국인 포함 (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 영역에 속한 공문서에 접근할 권리(법 제9조 제1항) → 모든 사람(개인, 법인 포함) • 공적영역에 속하지 않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법 제11조 제1항) → 당사자(즉, 자신의 권리, 이익 또는 의무가 당해 사안과 관련된 신청인, 항고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나(any person)” (5 U.S.C. § 552 (a)(3)(A)) 1) 자연인 2) 법인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 외국인 포함 • 수형자 포함 	모든 국민	누구나(법 제1조 제1항) 국민에 한정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인(人) • 모든 인(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개인(every person)은 이 법에 따라 다 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당해 정보가 공개대상 인 정보인 한 외국인을 별도로 차별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시청구권자로 ‘누구든지(何人も)’라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3조). 이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모두 청구권자가 됨.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공개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에 포함된 자신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법 제12조) → 모든 개인 • 당국(법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 행정기관 및 기타 ② 국가기관의 법원 및 기타의 법 집행기관 ③ 국영기업 ④ 지방자치단체 ⑤ 금융감독기관, 국민연금기관을 포함한 핀란드 은행 및 공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기관(5 U.S.C. § 552(f)(1)) • 연방정부의 모든 행정청, 준기관, 정부법인, 정부의 관리하에 있는 법인, 기타 연방정부 행정부의 모든 독립 기관 및 독립 규제위원회 포함 	<p>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다만 스코틀랜드 지방에 위치한 중앙정부 기관은 2000년 정보자유법 적용대상임. 공공기관의 결정권은 법무장관에게 주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방의 행정청 ② 연방의 행정 이외의 연방기관이나 연방시설(그들이 공법상의 행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상 법 제1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법인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연방, 주 또는 자치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 규정된 행정기관을 보조하거나 그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입법에 의하여, 혹은 그 입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1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와 법원이 제외되어 있음. 2) 중앙행정기관(내각부에 설치된 기관, 「내각부 설치법」에 따라 내각부에 설치된 위원회 등의 기관)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p> <p>② 지방자치단체</p> <p>③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p> <p>④ 각급 학교</p> <p>⑤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p> <p>⑥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p> <p>⑦ 사회복지법인</p> <p>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p>	<p>립적인 기관(연금보안 센터 및 농업연금연구소의 문서 포함)</p> <p>⑥ 의회의 기관</p> <p>⑦ 스웨덴인들의 자치구인 올란드(Åland)의 행정기관과 올란드 내에 설치된 국가기관</p> <p>⑧ 독립적인 위원회, 협의체, 위원회, 실무단, 조사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지방자치단체 연감 및 명명 또는</p>	<p>• 연방의회 내지 연방법원은 연방 정보자유법(FOIA)상 공개대상 기관이 아님.</p> <p>• 주(州) 정부 기타 지방 정부는 연방 정보자유법(FOIA)상 공개대상 기관이 아님.</p>				<p>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 사단(위원회, 협의회, 하부-협의회 혹은 다른 단체)은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된 유권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유권기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p>	<p>3)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른 기관(경찰청, 검찰청 등)</p> <p>4) 회계감사원</p> <p>5) 공내부 및 그 소속기관</p> <p>② 지방자치단체</p> <p>③ 「독립행정법인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법인 등</p> <p>1) 각종 독립행정법인</p> <p>2) 국립대학법인</p> <p>3) 대학공동이용기관법인</p> <p>4) 특수법인(일본중앙경매회)</p>

부 록

구 분	한 국 기관 또는 단체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①, ②, ⑦ 등에서 정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거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기타의 유사한 기관들이 포함</p> <p>⑨ 법, 명령 등에 의거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법인, 기관, 재단 및 개인(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p> <p>⑩ 북음주의 루터교 (Evangelical Lutheran Church)</p>						5) 허가법인 (일본은행)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공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법 제3조, 제2조제1호) - 전자문서로서 포함되며, 그 밖에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영역에 속하는 공문서(법 제6조 제1항 각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일지에 대한 기재 또는 유사한 기록 ② ③ 및 ④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보 제공 또는 평을 위한 안내장, 제안서, 탄원서등(부록 포함) ③ 용역 또는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의거한 기타의 계약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U.S.C. § 552(f)(1) 전자적으로 작성, 보유,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공개대상인 연방 행정기관이 정부 기록 내지 문서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5 U.S.C. § 552(f)(1)(A)) 위 정보를 정 보공개대상인 연방 행정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연방 행정기관 아닌 	공공기관의 모 든 정보 중 정보 공개 의무를 면제받는 면제 대상, 완전 면제, 제한적 면제가 있다. 또한 ‘제한적 면제’에는 ‘불이익 심사’와 ‘분류에 의한 면제’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방식을 불문하고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일체의 기록(법 제2조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포크 아일랜드의 기록을 하거나 관련된 것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법인 사단이 위원회, 협의회로 구성되는 기관 • 법원(노포크 아일랜드의 법원은 제외)은 규정된 유권기관으로 간주한다. • 행정적인 사안에 관련된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의 직원 직무상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문서, 도면 및 전자 기록(법 제2조 제2항) - 우리 나라 법 제가 “매체에 기록된 사항”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문서, 전자기록 등의 매체를 공개대상으로 한다.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이 있는 경우, 제공에 부수 및 되는 정보 및 그러한 제공을 고려하기를 위하여 준비된 기타의 의견 및 작성된 문서</p> <p>④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권한의 범위 내의 예산발의의 일관된 전체를 형성하며, 중요한 결정이나 계획에 대한 대안, 이슈,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 및</p>	<p>주체가 당해 연방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정보 역시 포함됨</p> <p>(5 U.S.C. § 552 (f)(1)(B)).</p>				<p>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및 안보 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통계 기타의 의견 ⑥ 의사록 ⑦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⑧ 당국의 결정, 발표, 법률문서, 계약 및 ①-③ 또는 ⑤-⑦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망록, 의사록 및 기타의 문서들 ⑨ ①-③ 또는 ⑤-⑦에 규정되지 않은 문서 ⑩ 위원회의 보고서, 논문 및 일반인에 대하여 배포할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비공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밀 공문서(법 제24조 제1항 각호) ① 정부 외교통상위원회 의문서, 외무부장관의 정치적 평가, 외국과의 정치적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대상 정보(5 U.S.C. § 552(b)(1)-(9))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 또는 외교정책을 위해 비밀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정보 중 ‘완전면제’ 대상에는 다른 정보를 통해 습득될 수 있는 정보, 대내 첩보국, 해외첩보국, 정부보안사령부 등의 국가 안보 기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공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제3조) 1.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a) 국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b) 연방군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짜, 보존장소, 형식, 매체를 불문하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밖의 공법인 또는 그러한 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 문서에는 전자 문서가 포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5조 각호) ① 개인에 관련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그 밖의 개인을 식별할 수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p> <p>③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사항</p> <p>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p> <p>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p>	<p>경제적 협상 관련 문서 및 외부행정 분야의 암호화된 메시지(장관이 달리 결정할 수 있음)</p> <p>② 핀란드와 외국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관한 것 이외의 것</p> <p>①에 규정된 문서, 국제재판소, 국제조사기구 또는 기타의 국제기관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문서, 외국</p>	<p>지가 특별히 허가되고 대통령령에 의해 실제 적절하게 비밀로 지정된 사항</p> <p>②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 규칙 및 관계에만 관련된 사항</p> <p>③ 법률에 의해 공개가 면제된 사항</p> <p>④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비닉권이 인정되는 정보 또는 비밀에 속하는 상업</p>	<p>보유한 정보, 법정 기록, 의회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 공무원의 효과적 수행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개인 정보, 대외비를 조건으로 제공된 정보,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가 있음.</p> <p>‘제한적 면제’ 대상에서 ‘불의의심사에 의한 면제’ 정보에는 국방, 국내관계, 국가의 경제적 이익, 감사법집행, 감사</p>	<p>군사적 이익과 그밖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c) 내적인 또는 외적인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p> <p>d) 재무, 경쟁, 규제, 담합하는 행태, 정통, 제 및 감독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p>	<p>스를 수행하는 사법인이 생산하고 취득한 정보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특히 소송자료, 보고서, 기록(comptes rendus)연구물, 조서, 통계, 지침, 회람, 공문, 정부문서 및 답변, 교신, 의견, 규정 그리고 결정이 해당된다.</p>		<p>있는 것 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으나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권리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p> <p>② 법인 그 밖의 단체에 관련된 정보 또는 상업에 영위하는 개인의 당해 사업에 관계된 정보로서 아래 각 목에 규정된 것.</p> <p>③ 공개됨으로서 국가안전을 해칠 우려,</p>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계약·기술 개발·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 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⑥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⑦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⑧ 공개될 경우	의 당국, 자 연인 또는 법인 과 핀란드 공화국, 시 핀란드 시 민, 핀란드 주민 또는 핀란드에서 영업하는 법 인의 관계에 관한 문서 ③ (i) 범죄수사 를 수행하는 경찰 기타 당국, 검사, 조사와 감독 에 관한 책 임을 지는 당국에 대하 여 작성하는 범죄 보고서. (ii) 범죄수사 또	정보 내지 금융정보에 해당 되는 사항 ⑤ 행정기관과 의 소송관 계에 있어 행정 기관 상호간 내지 행정 기관 내부의 각 서 또는 서 신에 해당 되는 사항 ⑥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부당 하고 명백하 게 침해하게 될 인사 내 지 의료에 관한 정보에	기능, 공무의 효과적 보전과 사업상의 이익 이 있고, '분류' 에 의한 정보에는 공표 예정된 정보, 국가안보, 공 공기관에 의한 조사 내용, 정 부 정책 형성, 국왕과의 의사 소통, 환경 정 보, 개인정보 가 있음.	e) 재무에 대한 외적 통제와 관련된 사항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는 경우 f) 금지되어 있 는 대외경제 교류에 대한 보호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는 경우 g) 진행중인 재판 절차의 진행, 공정한 절차에 대한 당사 자의 권리 또는 행사 법적 수사, 질서위반법				외국 또는 국제기관 등 의 근로관계 에 손상을 줄 우려 또는 이국 또는 국제기관 등과의 교섭 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행정 기관의 장이 인정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정보 ④ 공개됨으로써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수사, 공소유지, 형 의 집행 그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는 기소여부 결정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작성된 문서 및 소환장 청서, 소환장 및 피고인의 답변서 ④ 범죄 예방 및 범죄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범죄 수사, 수사하는 경찰 및 기타의 당국이 유지하는 기록물, 범죄예방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 신원 및 여행할 권리	해당되는 사항 ⑦ 사법(司法) 목적으로 작성된 조사기록 내지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i) 소송절차를 저해함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ii) 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iii)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부당하게 침해됨이 합리적으로 예		상의 수사 및 징계법 상의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의 공개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경우 a) 국제적 협상이나 b) 행정기관의 협의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비밀보호에 관한 법규나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의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⑤ 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또는 상호간의 협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로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를 결정하거나 조사하기 위한 행정절차에서 취득된 사건의 기록, 타인의 신원 확인 정보, 어떠한 자에 대하여 발행된 특수한 신분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 또는 여행증서는 경찰, 국경수비대, 세관, 교정당국의 기술적 및 기술적 계획 및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p>	<p>상되는 경우, (iv) 비밀리에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지방정부, 외국의 행정기관, 관공서 또는 민간기관 등의 비밀정보원의 신원이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및 사법당국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기록이거나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국가안전보</p>		<p>하여 규율되는 비밀유지의 의무 대상이 되거나 특별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이 자신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정보의 공개가 경제적 거래 또는 사회보장 또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연방의 재정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신뢰에 기초한</p>			<p>시, 공개됨으로써 슬직한 의견교환 또는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 부당하게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p> <p>⑥ 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및</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는 문서</p> <p>⑥ 접근이 문제 해결을 저해하거나 당사자에 대한 피해 또는 고통을 야기할 절박한 이유가 없는 경우 고소사건에 관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고소인에 관계되는 문서</p> <p>⑦ 사람, 건물, 시설, 구조물, 데이터 및 통신 시스템의 보안계획의 실현과 관련이 있거나</p>	<p>장에 관한 조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 서 작성한 기록으로서 공개의 경우 비밀정보원에 의해서만 제공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v) 사법(司法)상의 수사 내지 소추의 지침, 기술이나 절차를 공개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공개가 법의 침탈을 초래할 것이 합리적으로</p>		<p>행위에 관한 제3자의 이익이 정보공개청구의 시점에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신뢰에 기초한 정보 연방회의정보부(Bundesnachrichtendienst) 및 그 밖의 연방의 행정청이나 공공기관이 보안감사법(Sicherheitsüberprüfungsgesetz) 제10조 제3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들 기관에 대한 정보</p>			<p>지방독립행정법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됨으로써 당해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상, 당해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문서의 의존부에 관한 정보(제8조) 개시 청구에 대하여 당해 개시 청구에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그것에 영향을 주는 문서</p> <p>⑧ 사건 및 비상사태, 민사방위 및 사권수사와 관련된 문서</p> <p>⑨ 비밀경찰 및 기타의 당국의 국가안전유지에 관한 문서</p> <p>⑩ 군사기밀, 군대의 물품, 조직, 위치 및 작전, 국가의 무장 방어물 또는 기타의 방어물에 사용된 발명품, 시설, 설비 및 시</p>	<p>예상되는 경우, (vi)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위각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p> <p>⑧ 금융기관의 규제 또는 감독에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을 대신하거나 이와 같은 행정기관에 제 공하기 위해 작성된 검사, 운영 또</p>			<p>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p> <p>1.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 결정 또는 임박한 행정청의 조치의 결과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법 제4조)</p> <p>2. 개인관련정보 정보(법 제5조)</p> <p>3. 지적 재산권과 영업비밀 및 업무상 비밀 (법 제6조)</p>			<p>관계된 행정 문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답하는 것을 만으로도 불개시정보를 개시하는 것이 될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문서의 존재를 밝히지 않고 당해 개시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시스템,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타의 사항, 방어진비 접근이 에 관한 문서</p> <p>① 통화정책 또는 외환정책에 있어서의 결정, 조치 또는 준비, 금융정책, 소득정책 또는 외환정책 분야의 결정이나 조치를 위하여 필요 한 금융 또는 소득 정책의 준비 또는 조사에 관한 정보</p>	<p>는 상황 관련 보고에 포함되거나 관련된 사항</p> <p>④ 지질학, 지구 물리학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p>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국 경	해 내	포괄시 포괄	자 여	패 영
		<p>⑫ 금융시장 및 보험 운영자 및 금융시장과 보험시스템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를 감독하는 당국의 제정 범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p> <p>⑬ 국민경제에 관한 통계, 금융정책 이니셔티브, 운영계획 및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명백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⑭ 멸종위기의 동물 또는 식물 중, 중요한 자연서식지의 보호에 관한 정보</p> <p>⑮ 당국의 조사 또는 기타의 감독 업무에 관한 정보</p> <p>⑯ 조사 및 통계를 위한 기본 자료</p> <p>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기타의 공기업 또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의 영업 또는</p>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국 경	해 내	포 랑 스	자 여	패
		<p>직업적인 비 밀에 관한 정보</p> <p>⑱ (i) 국가, 지방 자치단체, 노 동 파트너 또 는 노동쟁의 당 사자로서 기타의 공기 업이 수집하 거나 취득한 정보 (ii) 농 업 보조금에 관한 협상에 대하여 국가 의 대리인이 수집하거나 취득한 정보</p> <p>⑲ 재판을 준비 할 목적으로 재판에서 소 송당사자의</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역할을 하는 당국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 ㉔ 사업 또는 직업적인 비밀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는 문서 및 기타의 유사한 사업에 관한 정보 ㉕ 논문 또는 기타의 과학적 연구, 기술적 또는 기타의 개발 프로젝트 또는 그 평가를 위한 자료에 관한 문서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국 경	해 내	포 랑 시	자 여	패 영
		<p>⑳ 입학시험 또는 기타의 시험 또는 시험에 관한 정보</p> <p>㉑ 어떠한 자의 연간수입 또는 순자산에 관한 자료, 보조금 또는 수익의 근거가 되는 수입 및 자산에 관한 자료 또는 그 자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p> <p>㉒ 망명자 또는 망명을 요청하는 자, 거주중인 또는 비자에 관한 문서</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㉔ 복지 수급인 또는 노동 관리의 개별 고객, 수당, 지원조치,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에 부여되는 개별 고객에 대한 노동관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어떠한 자의 건강상태 또는 불리한 조건, 그에게 부여되는 의료 또는 치료에 관한 정보, 그의 성적 행동 및 선호에 관한 정보</p>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영 배	프 랑스	자 여	패 영
		<p>⑳ 범죄 용의자, 피해자 또는 형사 문제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자의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범죄 피해자에 관한 정보</p> <p>㉑ 범죄 용의자에 대한 정 신감정, 청소 년 범죄자에 대한 성격검 사 또는 구 금형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봉사활동의 실현가능성에 관한</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연구와 관련한 정보 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가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 재소자 또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적 문서 및 기록 ㉕ 어떠한 자에 대한 심리검사 또는 적성검사 또는 그 결과에 관한 정보,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영국	프랑스	자어	영어
			<p>징집병의 할당에 대한 평가, 피고 용인의 선발 또는 급여의 기준 설정에 관한 정보</p> <p>③ 학생복지 및 교육면제, 학생과 수험생의 시험결과, 학교 졸업장에 관한 문서,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구두의 평가를 포함하는 기타의 문서, 입학 자격시험 수험생 내는 학교들 가운</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핀란드 대학입학 자격시험위원회 (Matriculation Examination Board)의 중재 부서 ㉔ 어떠한 자에 의하여 부여된 비밀 전 화번호에 관한 정보 또는 모바일 통신장치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개인의 주소, 거주지 또는 일시적인 거주지, 전화 번호 또는						

부 록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해 내	프랑스	자 여	패 널
		기타의 연락 처에 관한 정보 ② 어떠한 자의 정치적 신념 또는 사적으 로 표현된 관 견해에 관 한 정보, 생 활방식, 자발 적 단체에의 참여, 관심, 가족생활 기 타 유사한 개 인적 환경에 관한 정보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신 청 방 법 정 보 공 개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법 제10조) • 서면의 경우 ①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해야 함 • 구두의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을 신청하는 자가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는 경우, 당국의 재량권 행사 또는 결정에 필요한 한,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신청 이유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법 제13조 제1항 3문). • 다만, 기밀문서 등에 대한 접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 정보보호를 위한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기관 및 비공개 등 을 사전에 정하여 공표 (5 U.S.C. § 552(a)(4)(A)(i)) •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식별가능할 정도로 합리적 모사 (“reasonably describe”)하면 충분하며, 기록 내지 문서를 특정 하지 않아도 됨(5 U.S.C. § 552(a)(3)(A)(2)(i)) 	<p>서명신청서의 제출에 의함. 정보공개 신청서는 이메일로 대체할 수 있음.</p>	<p>특별한 규정 없음(서면, 구두로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최고행정법원과 행정법원의 의견, 제정법원법전 제L.141-10조에 규정된 회계법원 문서, 같은 제정법원법전 제L.241-6조에 규정된 지방회계법원의 문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래 위원회가 그의 조사, 심리, 결정의 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호유하는 문서, 공적생활의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대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에 관련된 정보 - 사생활의 비밀에 관련된 정보 - 국가안보 혹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내각 문서 - 법의 집행 및 공공안전을 보호하는 사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법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정보 - 의회 예산사무실 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법 제4조 제1항) 또는 전자신청 가능(일본 총무성령 제39호 제3조) • 양자 모두 ① 개시청구를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주소 및 법인 기타 단체는 그 대표자의 성명, ② 행정문서의 명칭 기타 개시청구와 관련된 행정문서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제4조 제1항), ③ 개시 실시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청구조서를 이 작성하여 이 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 인하여야 함.</p>	<p>등을 설명해 야 함(법 제 13조 제2항).</p>				<p>2013-907 법 물 (이해충돌 방지 등을 규 정한 법률) 제20조가 규 정한 공적생 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청 의 임무수행 범위 내에서 동 위원회가 자신의 조사 권한에 의해 작성되고 보 유되고 있는 문서, 공중보 건법전 제 L.6113-6조에 규정된 보건 기관 인증보 고서 작성 이 전의 문서, 동 법전 제L.1414-</p>	<p>- 문서의 공개 가 의회나 법원을 모독 하게 되는 경우 - 영업비밀 혹 은 상업적으 로 가치 있 는 정보 - 선거인 명부 및 관련 문서</p> <p>• 조건부 비공 개 대상정보</p> <p>- 공공이익을 위하여 공개 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p> <p>- 연방정부 혹 은 노포크 아일랜드 정 부의 재정적 혹은 재산상</p>	<p>방법에 관한 사항(법 제14 조 제2항)</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주요 특징					
입법 목적					
포괄성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 - 기관의 특정 업무 - 개인의 사생활 - 호라 관련 정보 - 사업에 관련된 정보 - 연구에 관련된 정보 - 경제에 관련된 정보
예외					
3조에 규정된 보건의료 종사자의 인증 이 전의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법 제2조제2호) • 사본 교부(법 제2조제2호) • 전자적 공개(법 제2조제2호, 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에게 구두로 내용을 설명하고 검토, 복사 또는 청취되도록 서류를 교부하거나, 사본 또는 출력물을 발행함. 문서의 분량으로 인해 복사가 곤란하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신청된 방식대로 허가해야 함(법 제16조 제1항) • 당국의 결정은 전산화한 공공 정보의 경우는 자기 매체 또는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및 사본 교부 (“public inspection and copying”) (5 U.S.C. § 552(a)(2)) • 공개청구 정보 문서 내지 기록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전자적 방식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가 희망하는 형태와 방법으로 공개 (5 U.S.C. § 552(a)(3)(B)-(C)) • 단, 정보공개 		<p>정보제공(구두, 문서, 전자적 방식. 법 제2조 제2항, 제7조 제3항) 문서의 열람(법 제2조 제2항) 그 밖의 방법 (법 제2조 제2항)</p>	<p>문서(인증평가 과정에서), 2001년 사회보장 제정에 관한 2000년 12월 23일 제 2000-1257호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보건기관들에 대한 감사 보고서, 특정인을 위하여 시행된 서비스제공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실제 작성된 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청구는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로서 청구 - 이 법률의 목적에 따른 청구임을 명시 - 기관이나 장관이 특정하기 용이하도록 문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 - 청구인에 대한 통지를 수취할 수단을 명시하여야 한다(전자우편 주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사본교부, 전자적 공개(법 제14조 제1항)
	공 개 방 법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자적 형태의 사본을 발부 하여 제공(법 제16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이 허용되는 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접근은 사본 또는 출력물, 전자적 형태의 사본으로 접근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법 제16조 제3항) 	<p>청구에 대해 문서로 답할 의무 또는 정보공개 청구에 답하기 위해 별도의 목록 또는 통계 등 형태의 기록이나 문서를 새로이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청구 방법 - 기관의 사무직원, 혹은 장관에게 현재 관에 계 현재 전화 번호부 등에서 명시된 중앙 혹은 지역 사무실로 신청 - 기관 주소로 선불 우편신청 - 기관이나 장관이 명시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 발송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부 분 공 개 가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의무 -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가능 - 문서의 일부만 기밀인 경우, 기밀인 부분도 공개하지 아니하고도 접근이 가능한 때에는 문서의 공적 부분에 대한 접근이 허용 (법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허용 (5 U.S.C. § 552(a)(1)) -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p>비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누설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정보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 허용 (법 제7조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이메일도 가능) - 청구대상 정보를 정확히 적시해야 함.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행정청은 그 일반성 또는 불명확성 때문에 신청된 정보를 가려 낼 수 없는 그런 정보에 답신하여야 할 의무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혹은 장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열람 및 사본 교부 -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다. - 정보를 다른 로드를 할 수 있게 한다. - 정보를 다른 로드를 할 수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주소의 링크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공개 의무 -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제6조 제1항).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결정시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법제13조제1항) • 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제13조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거부 결정시 ①거부사유, ②자신이 당국에 의하여 결정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③서면 접근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신이 그 당국에 전송된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야 함. ④ 신청에 따른 통수료를 통지하여야 함 (법제14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기관이 관련 절차와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표(5 U.S.C. § 552 (a)(4)(A)(i)) •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공개하고, 비공개인 경우 사유와 함께 불복절차를 고지해야 함(5 U.S.C. § 552 (a)(6) (A)(i)) 	요청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공공기관은 근무일 기준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지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2극적 정보관계에 관하여는 규정없음. 3극적 정보관계에서는 문서로 제3자에게 결정 통지(법제8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의 방식은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다. 즉석에서의 열람, 종이의 복사물 또는 전자적 저장 매체 등을 통한 공개 중에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공개가 가능하다 : a) 즉석에서 무료로 열람에 의해 (문서 보존을 위해 그 열람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제외), b) 재생산이 문서보관을 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공개의 요건 - 기관이나 장관이 다수의 결정과 같이 결정할 경우 - 비공개문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절하는 경우 - 문서에 대하여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청구와 관계 없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경우 - 기관이나 장관이 삭제된 통해 수정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 및 일부 공개 결정시 그 취지 및 일시, 장소, 개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통지(법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 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법제13조제4항)
	정 보 공 개 어 부 결 정 의 통 지							

부 록

구 분	한 국	핀 란 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 랑 스	호 주	일 본
						<p>지 않는다는 행 조건으로 의해 정청에 의해 저 활용되는 저 동 그 장매체에 또는 그 일한 또는 는 그 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본에 대한 정보공개 의 의무가 있는 경우 -수정된 사본 이 청구와 무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기관이나 장 관이 수정된 사본을 마련 하는 것이 가능할 때 -수정의 성질 및 정도 -문서를 수정 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 -청구인이 수정된 사본에 대한 접근권 을 거부할 것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대한민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청구 및 청구인과의 상의에 비추어) - 기관이나 장관의 일부공개 의무 - 수정된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 청구인에게 수정된 사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특정	프랑스	호주	일본
사 전 공 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의무 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 국가의 정책에 의해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하여 정보,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의 일반적 공표규정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경제의 발전에 관한 통계자료,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자본 및 금융시장에 대하여 명백하게 영향력을 갖는 기타의 유사한 문서들은 제6조 및 7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후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공표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청구가 20일 이내에 공개하고, 비공개 의 경우 이 유와 함께 불복절차를 고지해야 함 (5 U.S.C. § 552(a)(6)(A)(i)) 		관련규정 없음	<p>매체와 양립가능한 저장매체에 복사한 것을 청구인의 비용으로(그 비용은 명령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이러한 재산상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 서) 교부하는 것에 의해, c) 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처리가능할 경우에 무료로 전자메일 형태로 이루어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공개시의 통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된 사실이라는 근거 - 삭제된 사실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의무 규정 존재하지 않음. 다만 법 제 24조에서 “정부는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의 총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가 적시에,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명백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을 충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법 제7조 제1항).	이야 함(법 제8조).						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의적, 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공 개 기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까지 연장 • 공개결정 없음 (현행법에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 • 신청 문서의 수가 많은 경우, 기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조치 또는 비정상적인 양의 작업을 요하는 문 제에 대한 검토, 결정에 대한 다른 유사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연장 가능(법 제14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행정기관 이 비용 관련 액수, 납부방법, 면제사유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표 (5 U.S.C. § 552(a)(4)(A)(i))하되, 합리적 범위 내의 비용이어야 함. • 공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상업적 이익 과 무관한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해야 함(5 U.S.C. § 552(a)(4)(A)(iii)) 	<p>신청서가 접수된 지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p>	<p>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별 제 7서 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에 대한 청구가 본 제 6조의 적용으로 전달가능 하지 않은 기술 (記述 mentions)을 내포하는 문서에 관한 것 이더라도 그 기술부분을 분리하거나 리가 가능할 때에는 이러한 숨김 또는 분리 이후 청구인에게 전달된다(동법 제6조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부의 통지 -청구와 관련 하여 문서공개에 대한 거부 의사 -실무상 거부 사유 제시 - 청구인이 일정 기간 상담 할 수 있는 기관의 사무 관이나 장관 사무실의 직원 고지 - 청구인이 상담 직원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고지 - 청구인이 상담 직원과 상담할 수 있는 기간(상담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연장 (법 제10조) • 공개결정 간 주 규정은 없음.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일본
							<p>간)이 청구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것 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 수정에 대한 보조 조치 • 청구인이 상담기간 내에 통지에 따라 상담 직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 기관이나 장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실무상 거부사유가 없도록 청구내용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 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비범위에서 청구인 부담 (법 제1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의 복사, 출력의 형태로의 정보접근, 기술적인 터페이스 또는 전자적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정보에 대한 접근 지원, 당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검색 및 전달에 대하여는 수수료 부과 (법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복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기각결정을 한 책임자의 성명과 직위 고지, 이후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함. 단, 행정기관 		<p>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직무행위 대해 수수료와 경비 징수(법 제10조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공개법 제2조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 받은 유관 행정청은 한 달 내 답신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칙목은 목시적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정보 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의료 정보의 경우 5년 미만된 정보인 경우에는 8일이고 5년 이상 된 정보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은 법령 상 의무가 있거나 허가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 대상자 일반 대중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나 범인격이 있는 단체 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비범위에서 청구인 부담 (법 제16조제1항)
	비 용 부 담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이 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적 구제절차에 따른 불복신청 없이 사법적 구제절차 이용 가능(U.S.C. §552(a)(6)(C)(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적 구제절차 (5 U.S.C. §552(a)(4)(B)) 			는 1개월이 기한이다.	<p>을 가능하게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다룬 로드를 할 수 있는 다른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공개함 -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관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함 	

구분	한 국	핀란드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호 주	일 본	
<p>• 30일 이내 이의신청(법 제18조제1항). 7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법 제18조제2항)</p> <p>• 행정심판(법 제19조제1항).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가 능(법 제19조제2항)</p> <p>•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p>	<p>• 행정소송절차법에 의한 상소(법 제33조)</p>		<p>신청된 정보의 공개가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단계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음. 최초의 이의신청은 해당기관에게 접수시키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반드시 그에 대한 ‘내부심사’(internal review)를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이 언제 될 것이지 예측할 수 없게 될 것 인지를 신청자에게 통고해 주어야 함. 내부심사는 공개</p>	<p>정보공개에 대한 의무의 신청 및 의무 이행 소 제9조 제4항)</p> <p>*정보공개관련 쟁송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행정법원법준용)</p>	<p>거부의 목적 또는 목적적 동의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법(私法)의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서비스관리 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으로 내려진 모든 개인적 결정은 이러한 결정이 그에게 사전에 통지되었을 때만 대항할 수 있다</p>	<p>• 기부의 목적 또는 목적적 동의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법(私法)의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서비스관리 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으로 내려진 모든 개인적 결정은 이러한 결정이 그에게 사전에 통지되었을 때만 대항할 수 있다</p>	<p>•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의 신청 및 의무 이행 소 제9조 제4항)</p> <p>*정보공개관련 쟁송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행정법원법준용)</p>	<p>•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의 신청 및 의무 이행 소 제9조 제4항)</p> <p>*정보공개관련 쟁송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행정법원법준용)</p>	<p>• 60일 이내 불복신청(법 제18조, 행정불복심사법 제45조). 2주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법 제21조, 제13조 제3항)</p> <p>• 행정사건소송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불복신청에 대하여 행정소송가능(법 제21조).</p>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p>거부 결정을 내린 당사자 이외의 직원으로 상급직원에게 말간다. 내부심사는 보통 2~3주 안에 마무리되지만 복잡한 경우, 특히 공익성심사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최대 6주까지 소요될 수 있음.</p> <p>내부심사를 통헤서도 애초의 공개 거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신청자는 이를 정보관에게 항소할 수 있음.</p>					

구	판	한	국	핀	란	드	미	국	영	국	에	뎬	스	프	랑	스	피	어	주				
									공정 신청자든 고기관이든 보판무관이 내대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3차 이 의신청을 통해 상고할 수 있 음. 정보공 개 심 판 소 에 서 이 3 차 이 의 신 청 을 다 룸. 정 보 공 개 심 판 소 의 결 정 은 최 종 심 급 의 판 단 으 로 사 법 적 구 속 력 을 가 짐.														

부록: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구분	한국	핀란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청구된 사실의 통보 (법 제11조제3항), 3일 이내에 공개 거부 요청가능 (법 제21조제1항) • 공개사실의 통지 및 행정쟁송 (법 제21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공개 또는 기밀제한의 해체에 있어 관련 정보의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 함(법 제16조 제3항, 제26조 제1항 2호,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2호). 			<p>정보 공개를 배제할 보호가 치있는 이익을 갖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부여 (법 제8조 제1항)</p> <p>공개결정의 통지, 결정이 존속력을 발한 때로부터 2주일 이후에야 정보 공개 가능 (법 제8지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비용의 징수의 요건 - 개인이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지 않음 - 개인에게 접근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청구된 사실의 통보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법 제13조), 2주일 이내에 공개 거부 요청가능(법 제13조제3항) • 불복신청(법 제20조) 및 행정소송(법 제21조)